

발 간 등 록 번 호

11-1240192-000003-01

가구부문 업무편람 I

2006

통계청도서관



B0055870



서울지방통계청

KNSO. Seoul Local Statistics Office

310.26
서667

머리말

급변하는 경제사회현상을 제대로 반영하고 나타낼 수 있는 정확한 통계의 생산이야말로 무엇보다 중요한 정보이며 무형의 사회간접자본입니다.

가구부문통계는 가계의 소득과 소비를 파악하고 나아가 노동력 인구의 구성 및 분포 파악을 통한 경제정책 수립의 귀중한 자료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통계의 생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조사에 대한 정확한 지침과 수행방향 등이 정립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업무편람은 가구부문 통계생산의 제반 업무지침서로서 실무자가 반드시 숙지하여야 할 개념정의·항목해설·전산입력시스템 등을 조사 특성별로 편제하고 휴대하기에 간편하도록 구성하여, 우리 직원들이 사무실이나 조사현장에서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책자가 조사관들의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현장조사의 정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조사 환경에 발맞추어 지속적으로 개선·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12월
서울지방통계청장 정창신

B558970



목차

가구관리

연동표본 가구관리

경제활동인구 조사

부록(한국표준산업·직업분류/흐름도)

경제활동인구 부가 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가구관리)입력시스템

가 구 관 리

I. 표본관리 업무개요

II. 표본설계 개요

III. 표본관리 업무별 세부내용

IV. 표본가구관리명부 작성요령

V. 거처변동내역서 작성요령

I. 표본관리 업무개요

1. 표본관리 목적

- 표본조사구내에서의 가구 전출 및 전입, 거처의 철거 및 신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변동에 대한 변화를 표본에 반영하고, 조사구역내의 조사대상 가구수를 적정한 수준의 규모로 유지관리
- 표본조사에서의 추정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불응가구관리
- 연동표본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사구내의 구역당 가구수를 적정한 규모로 유지함으로써 조사구의 연동 교체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2. 업무대상

- 가구부문 표본조사 중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가계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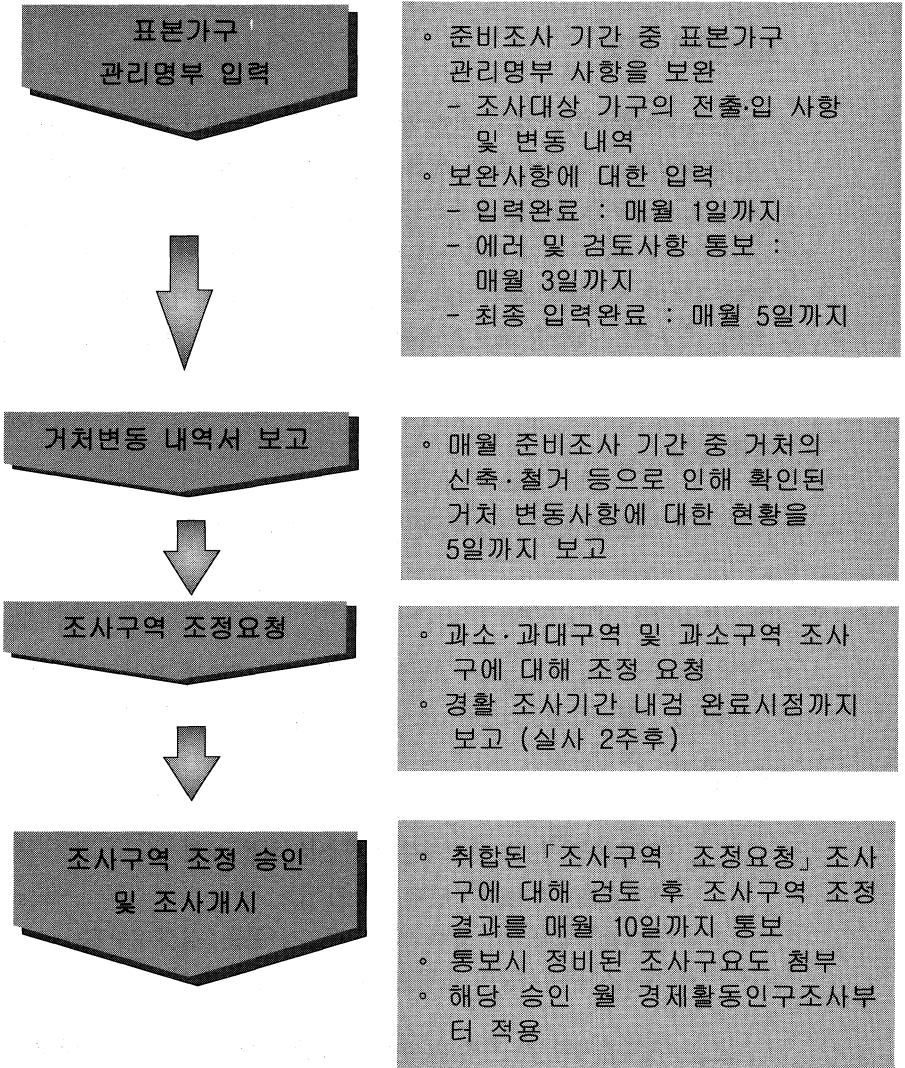
3. 업무분야별 주요내용

- 경제활동인구조사 : 표본가구관리명부, 거처변동내역서, 조사구역 조정
- 가계조사 : 표본가구관리명부, 조사구역 조정

4. 업무체계

-▶ 지방청(사무소) 보고사항 출장소분 취합 보고
거처변동내역서(업무연락: 매월5일),
경제활동인구조사 조사구역 조정요청(공문: 실사 2주후),
가계조사 조사구역 조정요청 (공문: 매월 20일)
- 지역통계과 각 지방청(사무소, 출장소)별 승인결과 직접통보
경제활동인구조사 조사구역 조정 승인결과 통보(매월10일까지),
가계조사 조사구역 조정승인(매월 25일까지)

5. 경제활동인구조사 일정 및 주요내용



6. 가계조사 일정 및 주요내용

표본가구
관리명부 입력



- 조사기간 중 표본가구 관리명부 사항을 보완
 - 조사대상 가구(원)의 전출입 사항 및 변동내역 등
- 표본가구 관리명부 전산입력 일정
 - 1차 입력완료 : 매월 18일까지
 - 에러 및 검토사항 통보 : 매월 20일까지
 - 최종 입력완료 : 매월 25일까지

조사구역 조정요청



- 전국가계조사 표본조사구 중 조사 불응으로 회수율 50%미만 중 3가구 이하 회수 조사구에 대해 사무소에서 일괄 취합 보고
- 보고일정 및 방법 : 매월 20일까지 공문으로 보고

조사구역 조정승인



- 취합된 「조사구역 조정요청」 조사구에 대해 검토 후 조사구역 조정 결과를 25일까지 통보

조사시작 준비



- 조정구역에서 익월부터 조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유대 강화 및 가계부 기입 지도 등을 실시

조사 개시

- 조정승인 결과에 의하여 익월 조사부터 조사 시작 (조정 승인 통보 시 명시)

II. 표본설계 개요

1. 모집단

-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자료 중 섬조사구와 기숙시설 조사구(2,691개) 및 특수사회시설 조사구(1,201개)를 제외한 24,998개 조사구(1,420,418가구)

2. 층 화

- 7대 도시(특별시와 광역시)와 9개 도로 우선 층화하고, 각 도에서는 동부와 읍면부로 다시 층화하여 전국을 25개로 층화

3. 표본규모

<표 1> 표본규모 현황

	경제활동인구조사		가계조사	
	조사 구수	총가구수	조사 구수	총가구수
표본 규모	1,629개	약 33,000가구 (조사구당: 20가구)	999개	약 8,700 적격가구 (조사구당 : 10가구)

4. 표본조사구 추출

가. 기초자료의 집계

-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구(10%표본조사구) 중 섬조사구 및 시설단위 조사구를 제외한 24,998개 아파트 및 보통조사구를 추출단위 조사구로 설정
- 추출단위 조사구별로 70개 특성에 대해 기초 자료를 집계

나. 특성지표의 선정

- 실업자 수와 특성 항목간의 ANOVA 분석에 의해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30개 항목을 특성지표로 선정하였다.

《 특성지표 항목 》

대분류	특 성 항 목
가 구 (8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가 가구수(비농어가) - 주택유형별 가구수(아파트, 단독, 다가구 및 연립) - 가구구분별 가구수(혈연가구) - 주택점유형태별 가구수(자가) - 100가구당 승용차 보유대수 - 100가구당 컴퓨터 보유대수
인 구 (9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인구수(남, 여) - 연령별 15세이상 인구수 (15~19세, 20~29세, 30~59세, 60세이상) - 교육정도별 15세이상 인구수(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경활상태 (13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활상태별 인구수(경활, 취업자, 실업자, 비경) - 산업별 취업자(농림어업, 광공업, 서비스업) - 직업별 취업자(전문기술, 사무, 서비스판매) -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근로자, 자영자, 사업주)

다. 표본추출단위 조사구명부 작성

- 5차 분류기준에 의해 각 층별로 정렬한 후, 표본추출단위 조사구 명부를 작성

라. 표본조사구 추출

- 추출단위조사구 명부에서 25개 지역별로 결정된 표본 수만큼을 확률 비례추출방법에 의하여 경제활동인구조사는 1,629개(동부 : 1,242개, 읍·면부 : 387개), 전국가계조사구는 999개를 표본조사구로 선정

〈표 2〉 분류기준 현황

	분류기준 1	분류기준 2
1차 분류	주택특성 1. 아파트 2. 단독가구 3. 다가구, 연립 및 기타	주택특성 1. 아파트 2. 단독가구 3. 다가구, 연립 및 기타
2차 분류	산업특성 1. 농림어업 2. 광공업 3. 서비스업	산업특성 1. 농림어업 2. 광공업 3. 서비스업
3차 분류	승용차 및 컴퓨터보유율 1. 평균이상 2. 평균이하	승용차 및 컴퓨터보유율 1. 평균이상 2. 평균이하
4차 분류	행정구역 및 조사구번호	실업자수 1. 실업자비율이 층별 평균이상 2. 실업자비율이 층별 평균이상
5차 분류	-	행정구역 및 조사구번호
적용층	광주, 대전, 경기 동부 및 읍면부, 강원 읍면부, 충남 읍면부, 전남 읍면부, 경남 동부 및 읍면부, 제주 동부 및 읍면부(11개층)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강원 동부, 충북 동부 및 읍면부, 전북 동부 및 읍면부, 전남 동부, 경북 동부 및 읍면부(14개층)

마. 표본 조사구역내 구역설정

- 확정된 표본조사구에 대하여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당시의 조사구요도 및 가구명부를 기초로 조사구경계확인->조사구요도작성->거처번호부여 및 가구명부작성->표본조사구 내 구역설정 절차에 의한 현지 확인을 통하여 현재 상태에 대한 조사구 요도와 가구명부를 재작성

바. 표본가구 선정

-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각 조사구별로 4개의 구역을 각각 표본으로 추출 하되 조사관리과에서 임의로 지정한 표본구역부터 시작하여 북쪽의 구역부터 시계바늘 방향으로 서로 인접한 구역을 추출하여 전수조사 실시
- 가계조사를 실시하는 조사구의 경우에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4개 조사구역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구역을 조사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이 구역 내에서 적격가구만을 조사대상가구로 한다.

사. 표본조사구 번호부여

- 표본의 연동을 위하여 각 층별로 분류지표에 따라 조사구를 정렬한 후, 차례대로 연동그룹부호와 연동그룹내 일련번호를 각 조사구에 부여
- 표본조사구 번호는 총 8자리로 구성, 조사구 교체시에는 6번째 자리까지는 변하지 않고, 7번째와 8번째 자리만 변경

㉠	㉡	㉢	㉣	㉤	㉥	㉦	㉧
---	---	---	---	---	---	---	---

자 리	내 용	분 류
㉠ ~ ㉡	사도	11 서울, 21 부산, 22 대구, 23 인천, 24 광주, 25 대전, 26 울산, 31 경기, 32 강원, 33 충북, 34 충남, 35 전북, 36 전남, 37 경북, 38 경남, 39 제주
㉢	동부, 읍면부	1. 동부, 2. 읍면부
㉣ ~ ㉤	연동그룹내에서의 일련번호	00 ~ 99
㉥	연동그룹을 표시하는 부호	
㉦	연동구조에 따라 바뀐 횡수 표시	0. 표본개편당시 조사구, 1. 2004.1월 이후 바뀐 조사구, 2. 2007.1월 이후 두 번째 바뀐 조사구
㉧	연동구조 이외의 사유로 바뀐 횡수 표시	

Ⅲ. 표본관리 업무별 세부내용

1. 표본가구관리명부

가. 작성 및 보완요령 : < IV. 표본가구관리명부 작성요령 > 내용 참조

나. 입력요령 : < 경제활동인구조사 입력시스템 > 참조

다. 표본가구관리명부 전산입력 일정

구 분	조사별 입력일정		조 치 사 항
	경제활동 인구조사	가 계 조 사	
1차 입력완료	매월 1일까지	매월 19일까지	○ 자료검증(editing) 실시 - 1차 입력완료 시점까지는 반드시 전 조사구의 자료 입력이 완료
에러 및 체크사항 통보	매월 3일까지	매월 20일까지	○ 『에러 및 검토사항』 통보 - 중복 입력 조사구 및 누락조사구 - 구역조정 결과와 상이한 조사구 - 기계내검을 통해 발견된 『에러 및 체크사항』 등
에러 및 체크사항 수정	매월 4일까지	매월 24일까지	○ 지방청(사무소)에서 스마트플로우(우 편)으로 결과보고
입력 마감	매월 5일	매월 25일	○ 최종 완료시점 이후로는 수정 불가능 - 확인 후, 최종적으로 자료 백업

《 에러 및 체크사항 검토결과 양식 및 작성 예시 》

○ 2006. 3. 25일 에러 및 체크사항 검토 및 입력 수정완료

【선택】 11 ~ 13번 항목 입력 누락

23101200-02-08-0102-주된 생활비 사업소득 입력

【에러】 가구구분이 변동되었는데 변동 년월일 입력 오류

23102200-01-02-0101-조사구 교체 조사구변동년월
2006.02.01로 수정했음

23102200-01-03-0101- "

23101200-02-08-0102- 2003,02,24일 전입

【체크】 가구원이 35세 이상인데 대학교 재학중임

23104700-02-29-0101-01-방통대재학

2. 거처 변동 내역서

가. 작성방법 : 《 V.거처변동 내역서 작성요령 》 참조

나. 보고기일 : 매월 5일까지

다. 보고방법 : 업무연락

- 지방청(사무소)에서 각 출장소분 취합 후 보고
- 조사구요도는 스캐너로 출력 후(PDF나 BMP 파일로 저장) 붙임

3. 경제활동인구조사 조사구역 조정 요청

◇ 과대조사구

- 조사구내 조사대상 가구수가 25가구 이상인 조사구

◇ 과소조사구

- 조사구내 조사대상 가구수가 15가구 이하인 조사구

◇ 과소구역조사구

- 조사구역 내 가구수가 3가구 이하인 구역이 1개 이상인 조사구

가. 조사구역 조정 대상 조사구

- 과대 및 과소조사구, 과소구역조사구
 - 조사구 조정 필요성 및 월별 중복 유무와 관계없이 전체 현황 보고

나. 보고 기일

- 경찰 조사기간 내검 완료 시점까지(실사 2주후)

다. 조사구 조정승인 결과통보 : 매월 10일까지

- ※ 조사구 조정은 지방청(사무소) 담당 팀장과 협의를 거친 후에 결정 함

라. 조사 적용일 : 해당 승인 월 경제활동인구조사부터

마. 조사구요도 정비

- 조사구역이 조정된 조사구에 대해서는 지역통계과에서 조사구요도를 새로 정비하여 1부를 스캔한 후 해당 지방청(사무소)에 통보

4. 가계조사 조사구역 조정 요청

가. 조사구역 조정 대상 조사구

- 조사불응으로 회수율이 50%미만 중 3가구 이하 회수 조사구, 조사구 역내 집단 전출예정으로 50% 이상 가구수 감소가 예상되는 조사구 (경매, 재건축 등)
- 적격대상의 적정 가구수가 3가구 이하인 조사구
- 조사구역 내에서 위험이나 조사장애의 소지가 생겨 조사를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나. 조사구역 조정 종류

◇ 조사구 변경

현행 표본 조사구가 조사수행에 부적합하여 가계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다른 경찰조사구로 조사구를 대체하는 경우

< 새로 대체된 조사구의 조사구역에서만 조사를 실시 >

- 대체 조사구 선정기준
 - 조사관할 업무 범위가 동일한 행정구역
 - 예상 적격가구수가 4가구 이상이면서 예상 회수율이 51% 이상인 조사구

◇ 조사구역 변경

- 현행 조사구역을 표본 조사구 내에서 가계조사를 하지 않는 경찰조사구역으로 조사구역을 변경하는 경우(조사기준 구역 변경)

- 변경전 조사구역에서 정상적으로 가계부를 제출하는 가구는 계속 조사
- 변경후 조사구역에서는 적격가구 전체에 대하여 조사
- 가계부 회수율 계산방법 : 새로 조사구역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되 변경전의 조사구역에서 정상적으로 가계부를 제출하는 가구수는 적격수(분모)와 회수권수(분자)에 각각 더해서 계산

《예시》 1,2구역(적격 5가구, 회수 가계부가 2권)에서 3,4구역(적격 4가구, 회수 가계부가 3권)으로 변경하는 경우

$$\begin{aligned}\Rightarrow \text{회수율} &= [\text{회수권수}(3+2)] / [\text{적격} + \text{회수권수}(4+2)] \times 100 \\ &= 5/6 \times 100 = 83.3\%\end{aligned}$$

◇ 조사구역 확대

- 현행 조사구역을 포함하여 표본 조사구 내에서 가계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찰조사 구역까지 조사구역을 확대하는 경우 (조사기준 구역 불변)

- 가계부 회수율 계산방법 : 조사 기준구역을 변동시키지 않으므로 확대된 조사구역에서 정상적으로 회수되는 가계부에 대해서만 적격수(분모)와 회수권수(분자)에 각각 더해서 계산

《예시》 1, 2구역(적격 5가구, 회수 가계부가 2권)에서 3, 4구역(적격 4가구, 회수 가계부가 3권)으로 확대하는 경우

$$\begin{aligned}\Rightarrow \text{회수율} &= [\text{회수권수}(2+3)] / [\text{적격} + \text{회수권수}(5+3)] \times 100 \\ &= 5/8 \times 100 = 62.5\%\end{aligned}$$

※ 유의사항

- 확대구역에서의 조사대상 가구는 조사담당자가 조사의 편의를 고려하여 임의로 선정하여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적격가구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부 조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기준 조사구역을 보완하는 개념으로써 회수율을 계산할 때 확대구역에서는 적격가구 중 불응가구 등의 사유로 인해 미회수되는 가구를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임
- 따라서 반드시 확대구역에서 조사가 가능한 가구임에도 불구하고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누락시켜서는 안됨

다. 조사구역 조정요청 양식 및 작성요령

《 기입예시 》

지방청 (사무소/ 출장소)	조사구 번호(구역)		회수율 (회수/적격)		주택 특성		조정 필요성 사유	조정 종류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서울	111112 (1,2구역)	111112 (1~4구역)	40% (4/10)	57% (8/14)	단독 빌라	단독 빌라	조사 불응	조사 구역 확대

- | | |
|-------------------|--|
| 「 회수율
(회수/적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격가구에 대한 회수가구의 비율을 정수(반올림) 처리하여 기입 ▷ 변경 후의 회수율의 산정기준은 「조정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유의 |
| 「조정 필요성
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격가구 부족이나 회수율의 저조 사유를 상세하게 기입 |
| 「조정 종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 조사구역 조정 종류》를 참고하여 가장 적절한 구역 조정 방법을 기입 |

라. 보고기일 : 매월 20일까지

마. 조정승인 통보일 : 매월 25일까지

바. 조사 개시일 : 익월 가계조사부터(조정승인 통보시 조사개시일 명시)

사. 참고사항

- 매월 20일 이후 접수된 요청 건에 대해서는 익월에 검토

5. 조사구 교체 신청

가. 표본조사구의 교체 신청 대상 조사구

《 표본조사구를 교체하여야 할 경우 》

1. 표본조사구의 특성이 아파트조사구(특성부호 A)나 보통조사구(특성부호 1)가 아닌 다음과 같은 조사구가 추출되었을 경우
 - 섬조사구(특성부호 2)
 - 기숙시설조사구(특성부호 3)
 - 특수사회시설조사구(특성부호 4)
 - 관광호텔 및 외국인 거주지역 조사구(특성부호 5)
 - 특별조사구
2. 조사구 내의 가구가 당해 조사년도 내에 전체 철거 또는 철거 예정인 조사구의 경우
 - 일부 철거인 경우 감소결과 조사구내 가구수가 40가구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3. 행정구역 개편(분동 또는 편입)으로 해당 조사구의 관할이 서로 다른 경우
 - 단, 조사구 전체가 편입되는 경우는 제외
4. 지형지물의 심한 변동으로 조사구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
5. 기타 조사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되었을 경우

《 조사구의 종류 》

1. 일반조사구

가. 아파트조사구(특성부호 : A)

5층 이상의 영구건물로서 구조적으로 한 가구씩 독립하여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내에 일반가구와 비혈연자 6인이상 19인 이하의 집단가구를 대상으로 일정한 가구수를 기준으로 설정한 조사구

나. 보통조사구(특성부호 : 1)

단독주택, 아파트 이외의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빌라, 맨션 등), 비거주용 건물내의 주택, 주택이외의 거처 내 일반가구와 비혈연자 6인이상 19인 이하가 거주하는 집단가구를 대상으로 일정한 가구수를 기준으로 설정한 조사구

다. 섬조사구(특성부호 : 2)

육지와 완전히 분리되어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을 대상으로 보통조사구와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설정한 조사구

라. 기숙시설조사구(특성부호 : 3)

기숙시설 명칭을 불문하고 비혈연자 20인 이상이 공동으로 숙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설단위별로 설정한 조사구

마. 특수사회시설 조사구(특성부호 : 4)

고아원, 양로원, 요양원, 나환자 수용소 등과 같이 일정한 장소에 비혈연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숙식할 수 있도록 설치된 수용시설 단위별로 설정한 조사구

바. 관광호텔 및 외국인 거주지역 조사구(특성부호 : 5)

관광호텔 조사구는 3등급(무궁화 2개) 이상에 대하여 호텔단위별로 설정한 조사구를 말하며, 외국인 거주지역 조사구는 외국인이 집단적으로 20인 이상이나 또는 10가구 이상 모여서 살고 있는 경우에 설정한 조사구

2. 특별조사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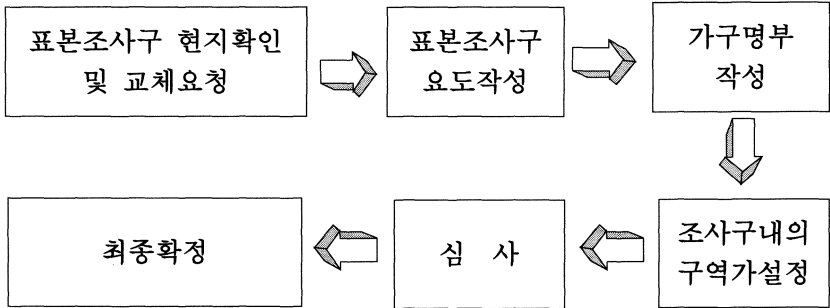
가. 외무부 관할조사구(해외공관)

나. 내무부 관할조사구(전투경찰대 등)

다. 법무부 관할조사구(교도소, 소년원 등)

라. 국방부 관할조사구(육해공군)

나. 조사구 대체 절차



다. 연동표본 교체 대상 표본조사구의 현지확인 사항

1) 조사구 특성 및 실재여부 확인

- 2002년 가구부문 통계조사 표본개편용 조사구는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중 아파트조사구와 보통조사구만을 표본추출대상으로 하였으므로, 해당 조사구의 특성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확인결과 표본 조사구의 특성이 아파트조사구(특성부호 A)나 보통조사구(특성부호 1) 이외의 조사구로 판명되면 반드시 표본 조사구 교체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행정구역 변경여부 확인

- 2000.11.1 이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하여 표본조사구의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 확인결과 행정구역 개편(분동 또는 편입)으로 해당 조사구의 관할이 서로 다른 경우는 반드시 표본조사구 교체 신청을 하여야 한다.

※ 단, 조사구 전체가 다른 행정구역으로 편입되는 경우는 제외

3) 표본조사구내의 지형지물 변동사항 확인

-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요도와 표본 조사구내의 지형지물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 확인결과 지형지물의 심한 변동으로 조사구 식별이 힘들 경우에는 반드시 표본조사구 교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라. 조사중인 표본조사구를 대체하여야할 경우

- 조사중인 표본조사구에서 표본조사구를 교체할 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사전에 지역통계과에 연락한 후 조치를 취한다.

마. 표본조사구 교체 신청양식

《 작성예 》

사무소	조사구 번호	행정 구역명	가계 조사	발 생 연월일	교체사유	비고
서울	11115200	양천구 신월2동 (제일연립)	○	2003.1.2	아파트 재건축	

- | | |
|---------|---------------------------------|
| 「가계조사」 | ▷ 해당 조사구가 가계조사구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 ○표시 |
| 「발생연월일」 | ▷ 표본조사구의 교체사유 발생 연월일을 기입 |
| 「교체사유」 | ▷ 교체사유를 비교적 상세하게 기입 |
| 「비고」 | ▷ 기타 참고사항 기입 |

IV. 표본가구관리명부 작성요령

1. 기본사항

- 표본가구관리명부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가계조사를 구분하여 매월 2회 조사하여 입력하며, 입력할 때는 반드시 『④구역번호』 ~ 『⑨가구주에 관한 사항』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기준에서 작성하고, 『⑩주택소유관계』 이후부터는 가계조사 기준에서 작성한다.

따라서, 『⑨ 가구주에 관한 사항』은 가계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막론하고, 반드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기준으로 작성하여 서로가 일치 되도록 하여야 함에 유의한다.

2. 작성시 참고사항

가. 기본 항목(① ~ ③)

《 기입예 》

① 조사 담당자	② 조사구 번호	③ 주 소			
A 1 5 0 3	1 1 1 2 2 8	행정구역번호:	1 1 2 3 0 6 4	주소:강남구 역삼1동 641-5	
	0 0			☎ (02)3453-1234	

나. 가구 항목(④ ~ ⑱)

《 기입예 》

④ 구역 번호	⑤ 거처 번호	⑥ 가구 번호	⑦ 거처 구분	⑧ 경제활동 대상여부	⑨ 가구에 관한사항	⑩ 가계조사 사 부	⑪ 주택 소유관계	⑫ 생활비의 주된소득
01	11	0101	1. 단독 주택 2	1 <input type="checkbox"/> 대상 1. 조사 2. 불응 <input type="checkbox"/> 대상외 3. 제외	M 3 산업 교육업 직업 교사	1.경 활 +가계 2.경 활	4	1. 근로소득 2. 사업소득 3. 연 금 4. 재산소득 5. 수증보조 6. 기타()

《 가 구 란... 》

1) 가구의 정의

- 1인 또는 2인 이상이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단위」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도 포함 가능

2) 가구의 유형

- (1)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혈연가구)
- (2) 가족과 가족이외의 사람들이 함께 사는 가구
- (3) 혼자서 살림하는 1인 가구(단독가구)
- (4) 혈연관계가 없는 남남끼리 함께 모여서 사는 5인 이하의 가구
(비혈연가구)
- (5) 혈연관계가 없는 남남끼리 함께 모여서 사는 6~19인 이하의 가구
(집단가구)
- (6) 기숙사, 보육원, 양로원, 장애인시설 등에서 살고 있는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20인 이상 집단적으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가구
(집단시설가구)
- (7) 혈연관계가 없는 외국인(외국 국적 소지인)들로만 구성된 가구
(외국인가구)

3) 가구구분 기준

(1) 취사, 취침등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1가구

예) 하숙 또는 5인이하 동거인이 있는 가구

※ 이때 이 인원이 20명을 초과하면 집단시설가구로 조사

(2) 혈연 가구원이라도 취사, 취침 등 생계를 달리하면 별도 가구로 분리

예) 형제와 한집(주택)에 살고 있지만 취사, 취침 등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나 자취가구 등

4) 유의 사항

(1) 집단가구는 원칙적으로 1가구로 조사하지만, 관리인 가구가 시설에 함께 살고 있는 경우는 분리하여 집단가구와 일반가구 2가구로 조사

(2) 집단시설가구는 이미 조사구 설정 시 「기숙시설조사구」, 「특수사회 시설조사구」로 설정되어 있음

(3) 집단시설가구는 조사에서 제외

예) 기숙사에서 기숙하고 있는 기숙자 가구, 20인 이상의 하숙인들 로만 구성되어 있는 가구 등

(4) 특수사회시설의 관리인가구 및 시설내에서 혈연을 이루고 있는 가구는 일반가구로 별도 분리하여 조사

예) 고아원의 원장가구, 모자원의 어머니와 그 자녀가구 등

(5) 외국인 가구는 조사에서 제외

※ 가구내에 외국인과 한국인이 동거할 경우 분리하여 외국인가구와 한국인 가구 2가구로 조사

※ 귀화한 외국인은 한국인으로 간주하여 일반가구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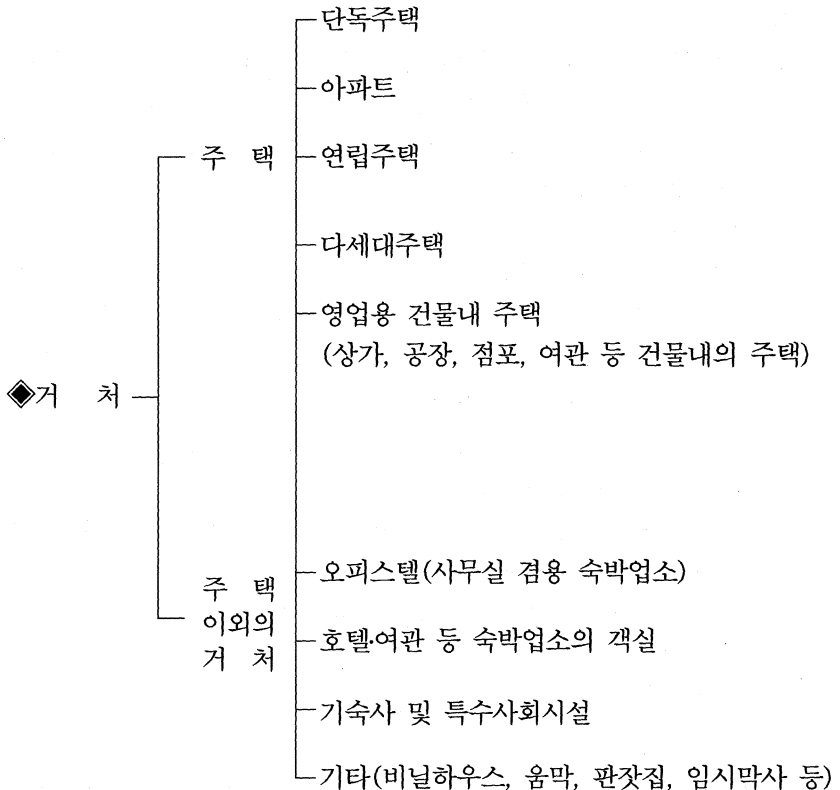
〈 거 처 란... 〉

1) 거처의 정의

거처라 함은 가구의 누락을 방지하고 조사의 편의를 취해 사용하는 개념으로서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모든 장소를 통칭하는 말로서 구조적으로 분리되고 독립된 하나의 거주단위』를 말한다. 따라서 거처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 ▷ 거주를 목적으로 건축된 일반독립주택
- ▷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각 단위
- ▷ 거주 목적이 아닌 별개의 상업용 건물과 공공용 건물
- ▷ 영구건물은 아니나 사람이 상주하고 있는 판자집, 천막, 움막 등
- ▷ 특수사회시설 건물

2) 거처의 종류



3) 주택

(1) 주택의 정의

주택이란 한 가구(집단가구 제외)가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지어진 집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 한 개 이상의 방 및 부엌
- ▷ 독립된 출입구
- ▷ 관습상 소유 또는 매매의 한 단위

(2) 주택의 종류

▷ 단독주택 : 통상 한 가구가 살림을 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을 말하며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포함한다.

※ 다가구용 단독주택

-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 되어진 주택으로서 각 구획마다 방, 부엌, 출입구, 화장실이 갖추어져 한 가구씩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으나, 각 구획을 분리하여 소유 및 매매(분양)가 불가능한 주택을 말한다.

▷ 아파트 :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5층 이상의 영구 건물로서 구조적으로 한 가구씩 독립하여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을 말한다.(상가아파트)

※ 4층 이하라도 아파트로 허가 받았으면 아파트로 봄

▷ 연립주택 : 한 건물내에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되어진 4층 이하의 주택으로서 건축 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 받은 주택을 말한다.(2~4층의 빌라, 맨션 포함)

▷ 다세대 주택 :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건축되어진 4층 이하의 주택으로서 건축 당시 다세대주택으로 허가 받은 주택을 말한다.

※ 1. 「다세대주택」은 주택(세대)별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매매 및 분양이 가능한 점에서 「다가구용 단독주택」과 다르다.

2. 건물의 동당 건축 연면적이 200평을 초과하면 「연립주택」, 200평 이하면 「다세대주택」에 해당된다.

▷ 영업용 건물내 주택(상가, 공장, 점포, 여관 등)

: 영업용 목적으로 건축된 건물 내에 사람이 살고 있는 경우,
그 거주부분이 주택의 요건(방, 부엌, 독립된 출입구)을 갖추고
있으면 여기에 해당된다.

☞ 영업용 건물 내 주택은 주택의 요건 중 「④소유 또는 매매의 한 단위」가
해당되지 않아도 주택이 됨에 유의한다.

☞ 단독주택인지 영업용 건물내 주택인지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주거용과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비교하여 주거용이 크면 단독주택으로,
영업용이 크면 영업용 건물 내 주택으로 구분한다

4) 주택 이외의 거처

(1) 주택이외의 거처의 정의

주택이외의 거처란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주단위를 말한다.

(2) 주택이외의 거처의 종류

▷ 오피스텔 : 사무실 겸용 주택

▷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 대실료를 받고 손님에게 숙박
설비를 제공하는 구조물

※ 주인가구가 여관 등 숙박업소 건물내의 주택의 요건을 갖춘 거주 부
분이 숙박업소 건물과 완전히 분리 독립되어 있을 경우에는 단
독주택에 해당됨에 유의한다.

▷ 기숙사 및 특수 사회시설 : 기숙사, 고아원, 양로원, 요양원, 보육원,
수녀원 및 대사찰 등과 같이 집단 수용
을 위한 구조물이 해당된다.

▷ 기타 : 천막집, 비닐하우스, 판잣집, 움막, 암자, 건설 공사장의
임시 막사 등 임시적 거주를 위한 구조물이 해당된다.

《 산업대분류 》	《 직업대분류 》
A : 농림업	B : 어업
C : 광업	D : 제조업
E : 전기, 가스, 수도사업	
F : 건설업	G : 도소매
H : 숙박, 음식업	I : 운수업
J : 통신업	
K : 금융 및 보험업	
L : 부동산 및 임대업	
M : 사업서비스업	
N : 공공행정, 국방	
O : 교육서비스업	
P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 : 오락, 문화, 운동관련	
R : 기타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S : 가사 서비스업	
T : 국제 및 외국기관	
U : 무직	
	1 : 관리자
	2 :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3 : 사무 종사자
	4 : 서비스 종사자
	5 : 판매 종사자
	6 :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7 :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8 :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 단순노무종사자
	A : 군인
	Z : 무직

《 가구주의 정의 》

가구주는 호주나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가구를 대표하고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구의 구성원으로서 사실상 생계유지를 위한 비용을 주로 조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가구주가 1년 이상의 해외근무, 장기 병원입원일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가구원을 가구주로 정하여 작성한다.

※ 해당가구의 생활수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구주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얻는데 목적이 있다.

※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기준으로 작성

가계조사과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가구주가 다를 때 반드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기준으로 작성하여, 두 조사의 가구주가 반드시 일치하도록 할 것

《 적격가구와 부적격가구의 구분 사례 》

◇ 부적격가구 사례

- 가구주 이외의 가구원이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
- 가구주 또는 가구원이 농업이외의 다른 수익이 농업소득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농가 요건의 규모로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
- 토지 등을 빌려서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

◇ 다른 가구의 가구원 전원이 지속적으로 식사를 함께하는 경우,

-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가구는 적격가구
- 제공받는 가구는 부적격가구

《 부적격 가구의 종류 및 정의 》

1) 농 가

생계, 영리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을 경영하는 가구

- ① 조사 기준시점 현재 경지 10a(약 300평)이상 직접 경작하는 가구
- ② 연간 농축산물의 판매금액이 50만원이상으로 농업을 계속 경영하는 가구
- ③ 단, 판매금액이 50만원 미만이라도 조사기준 시점 현재 50만원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

2) 임 가

생계, 영리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임업을 경영하는 가구

- ① 3ha 이상 산림을 보유하고 작년 1년간 산림산업 실적이 있는 가구
- ② 최근 1년간 벌목 실적이 있는 가구
- ③ 연간 임산물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가구
- ④ 연간 임업 종사일수가 90일 이상인 가구
- ⑤ 관상수업자에 등록된 가구
- ⑥ 유실수를 일정 규모 이상 재배하는 가구
밤(1,700평), 대추(300평), 호도(800평), 잣(7,000평)
- ⑦ 야생조수를 일정규모 이상으로 사육하는 가구

3) 어 가

가구주나 가구원 중에서 어업에 종사하면서 연간 1개월 이상 판매를 목적으로 해면에서 수산동식물의 채취나 양식 활동을 하였으며, 조사기준 시점 현재 어업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

4) 음식점, 여관, 하숙업 등을 경영하는 겸용주택 내의 가구

5) 가구원 중 영업상 사용인이 2인 이상 동거하는 가구

6) 비혈연 가구로 구성된 가구

7) 외국인 가구

- 가구주가 외국인일 때 부적격 가구에 해당

※ 단, 가구주가 한국인이고 가구원이 외국인일 경우는 부적격 가구가 아닌 적격가구임에 유의

《 기입예 》

⑬ 가계가구 구분	⑭ 1인가구 여부	⑮ 가계부채출여부	⑯ 미제출 사유	⑰ 전입연월일			⑱ 전출연월일			⑲ 비고						
				연도	월	일	연도	월	일							
1	1	1	0 1 2	0	2	0	7	2	5	0	2	0	7	2	5	
1.사 무 직 2.생 산 직 3.자 영 자 4.무 직 5.부 적 격 (사유:)	1.1 인 가구 2.2 인 이 상 가 구	<input type="checkbox"/> 제 출 1. 정 상 2. 부 실 <input type="checkbox"/> 미 제 출 3. 미 제 출 4. 대 상 외	사 유 _____													

《 부적격 사유별 부호표 》

- | | | |
|-----------------------------|--------|----------------|
| 01. 농가 | 02. 어가 | 04. 음식, 숙박업가구 |
| 05. 하숙업가구 | | 06. 부정기적 출타가구 |
| 07. 2인이상 영업사용인과 숙식을 같이하는 가구 | | |
| 08. 비혈연 자취가구 | | 09. 기타 분류 불능가구 |

※ 2005년 1월부터 1인가구가 조사됨에 따라 「03. 단독가구」 부호제의

《 미제출 사유 부호표 》

- | | | |
|---------------|----------------|------------|
| 01 주부장기출타 | 02 주부없음 | 03 연로 및 연소 |
| 04 기재능력 부족 | 05 관혼상제 | 06 질병,출산 |
| 07 분실, 자연재해 | 08 약속불이행 | 09 면접거부 |
| 10 맞벌이 부부 | 11 남편실업으로 주부취업 | |
| 12 남편부재로 주부취업 | 13 사생활 노출기피 | |
| 14 기타 가사사정 | 15 월중전출 | 16 월중 부적격 |
| 17 월중전입 | 18 월중적격 | |

《 월평균 추정소득 계층 구분 》

- | | |
|--------------------|--------------------|
| 1 : 50만원 미만 | 2 : 50 ~ 100만원 미만 |
| 3 : 100 ~ 150만원 미만 | 4 : 150 ~ 200만원 미만 |
| 5 : 200 ~ 300만원 미만 | 6 : 300 ~ 500만원 미만 |
| 7 : 500만원 이상 | |

다. 가구원에 관한 항목(㉔ ~ ㉚)

《 기입예 》

[2] 가구원에 관한 사항

㉔ 번 호	㉕ 이 름	㉖ 가 구 주 관 계	㉗ 성 별	㉘ 생년월일 (양력)			㉙ 학 력	㉚ 경제활동 상 태	㉛ 전입년월일			㉜ 전출년월일			㉝ 비고
				연도	월	일			연도	월	일	연도	월	일	
01	조성모	01	1	1978	02	17	106	1. 취업자	1	020720					
			1. 남 2. 여					2. 실업자 3. 비경인구 4. 제외자							

1) 경제활동인구 조사용

- (1) 가구원이란 한 가구에서 함께 살고 있는 구성원, 혈연관계와 관계없이 상주하는 사람(먼 친척, 친구, 가정부 등도 포함)
- (2) 상주하는 사람이란 조사 당시 조사구역에 생활의 본거지를 갖고 같이 사는 사람
- (3) 총가구원에서 제외되는 자는 외국인, 현역군인(단, 영외 거주군은 제외), 전투경찰(의무경찰 포함), 등(대상가구에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당연히 조사 대상자가 아님)이다. 혈연관계가 없는 동거인이라도 생활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가구원에 포함시켜 조사한다.

2) 가계 조사용

- (1) 가계조사에서의 가구원이란 주민등록 등재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실상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으로써 반드시 대상 가구에서 같이 생활한 기간이 15일 이상 이어야 한다.
- (2) 비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나 가족이라도 해외 거주 등의 사유로 가족과 같이 생활하지 않는 경우는 가구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 (3) 조사대상 기간 동안 출생, 사망, 혼인, 군 입대 및 제대, 취업, 학업 등의 이유로 가구원수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그 가구원이 대상가구에서 같이 생활한 기간(15일)을 기준으로 가구원수 포함 여부를 결정한다.

《 가구 및 가구원 변동 구분코드 》

□ 가구 및 가구원 증가요인

- 11 가구전입 12 개인전입 21 전입누락 22 착오(신규) 25 출생
31 조사구 교체 및 조사구역 교체로 포함(전입)
32 조사구 분할 및 조사구역 재설정으로 포함(전입)
33 조사구 추가 추출로 포함(전입)
41 조사구내 가구 이동으로 포함(전입)
42 조사구내 가구원 이동으로 포함(전입) 43 분가
44 연동표본 교체에 따른 포함

□ 가구 및 가구원 감소요인

- 51 가구전출 52 개인전출 61 전출누락 62 착오(전출) 75 사망
- 81 조사구 교체 및 조사구역 교체로 제외(전출)
- 82 조사구 분할 및 조사구역 재설정으로 제외(전출)
- 91 조사구내 가구 이동으로 제외(전출)
- 92 조사구내 가구원 이동으로 제외(전출) 93 통합
- 94 연동표본 교체로 제외

V. 거처변동 내역서 작성요령

1. 기본사항

가. 작성 목적 및 거처번호 부여방법

- 조사구역내 거처가 신축 또는 철거 등으로 인해 변경이 되었거나, 도로의 확장 등 지형지물의 변동이 있을 때 조사구 요도를 수정 보완하고 거처변동 내역서를 작성하여 지역통계과로 보고한다.
- 거처변동내역서는 조사구역내 가구의 과대 과소 등으로 인해 구역 재조정이 필요할 경우나 기타 조사구 관리의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 거처의 신축이나 누락으로 새로이 거처번호를 부여해야할 경우 조사구내에서 마지막 거처번호에 연결되도록 번호를 부여한다.

※ 이미 부여한 거처번호는 고유번호이므로 조사담당자가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된다.

나. 표본거처의 변동처리

- 철거거처 : 표본조사구내의 일부 거처가 철거된 경우에는 조사구요도 철거표시를 하고 거처변동내역서에 그 내용을 보고하며

조사대상구역의 거처인 경우에는 해당거처의 조사를 중지한다.

- 신축거처 : 표본조사구내 신축거처가 발생된 경우에는 조사구 요도에 거처의 모양을 표시하고 거처변동 내역서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고한다.

다. 보고기일 : 매월 5일까지

라. 보고방법 : 업무연락

- 요도는 스캐너로 출력하여(PDF나 BMP 파일) 업무연락에 첨부한다.
- 사무소에서는 출장소분을 취합하여 사무소별로 1부씩 매월 지역통계과에 보고한다.
- 변동내역이 없는 경우는 행정업무의 효율을 위하여 보고를 생략한다.
- 변동기간은 경제활동인구조사 이후부터 금월 조사시기까지를 대상기간으로 한다

2. 거처변동내역서 작성요령

《 기입예 》

조사구 번 호			담당자 성 명			소재지 【1】		
변동 거처 의 위치 【2】								
변동 유형 【3】	변동 유형	①거처 번호	②거처의 종류		③ 거 처 변동시점	④거주가구수		⑤비 고
			현 재	예 상		현 재	예 상	
특 기 사 항 【4】								

【1】 소재지

▷ 행정구역상의 읍면동까지만 기입한다

【2】 변동거처의 위치

- ▷ 반드시 조사담당자 보관용 요도를 부분복사하여 거처 변동상태를 표시한다.
- ▷ 변동이 심할 경우 2부를 부분 복사하여 전과 후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 ▷ 연립주택등의 신축시에는 정면투시로 거처를 표시하며 공간이 작을 때는 확대 그림을 첨부할 수 있다.

【3】 변동유형

▷ 신축, 개축, 철거, 거처통합, 요도보완, 거처번호부여 중 해당 사항을 기입한다.

□ 신축의 경우

- ▷ 사람이 살 수 있는 형태의 건물이 건축되어 새로 거처번호를 부여하는 경우
- ▷ 공지에 집을 짓는 경우나 거처의 완전 철거후 새로 집을 짓는 경우로 거처수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 두 거처를 완전히 허물어 한 거처를 짓거나 한 거처를 허물어 두 거처를 지을 경우 두 거처 모두를 신축으로 처리한다.

① 거처번호

- ▷ 신축된 거처번호를 기입한다.
- ▷ 1개 거처가 헐리고 2개 이상의 거처가 건축되었을 경우 - 한 거처에는 전에 부여되었던 번호를 사용하고, 또 한 거처는 해당 조사구의 끝번호의 다음 거처번호를 부여한다

《 거처번호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

- ▷ 관공서에 사택이 없는 경우
- ▷ 빌딩, 상가, 공장 등에 주거시설이 없어 상주할 수 없는 경우
- ▷ 사무실용으로만 지어진 건축물 등

- ② 거처의 종류
 - ▷ 현재의 거처종류와 신축 또는 개축 후의 거처의 종류를 기입한다.
 - ▷ 신축의 경우는 현재란을 공란으로 두고 예상란에는 신축 또는 개축 후 건물의 종류를 기입한다.
- ③ 거처변동 시점
 - ▷ 신축 또는 개축이 완료(입주 가능한 상태)된 날짜를 기입한다.
- ④ 가구수
 - ▷ 현재란에는 현재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가구수를 쓰며, 예상란에는 신축 또는 개축이후 늘어나게 되는 가구수를 기입한다.
- ⑤ 비고
 - ▷ 기타 참고사항을 쓸 수 있다.

- 개축의 경우
 - ▷ 1개 거처가 완전 철거되어 새로 1개 거처가 새로 건축되거나, 기존 거처에 2층을 올리는 등 공간의 변화에 의해 가구수의 변동이 생겼을 경우나, 독립된 출입구가 생겼을 경우
 - ▷ 거처번호는 변동이 없음
 - ▷ 거처번호 이후 각 란의 기입은 신축의 경우를 준용한다.
- 철거의 경우
 - ▷ 기존 거처가 완전 철거된 경우 또는 전면적인 보수나 증축을 위해 가구가 다른 곳으로 이주한 경우
- ① 거처번호
 - ▷ 철거된 거처번호를 기입한다.
- ② 거처의 종류
 - ▷ 현재란에는 철거되기 전 거처의 종류를 기입하고 예상란에는 재건축되는 거처의 종류를 기입한다.
 - ▷ 단, 재건축 예정이 없을 때는 『공지』로,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미정』으로 기입한다.
- ③ 거처변동 시점
 - ▷ 철거가 완료된 날짜 또는 예정된 날짜를 기입한다.

- ④ 가구수 ▷ 현재란에는 철거 예정 시점 바로 전까지 거주하고 있는 가구수를 쓰며, 예상란은 공란으로 둔다.
- ⑤ 비고 ▷ 철거후 개축이나, 신축 중일 경우는 개축중 또는 『신축중』 이라고 기입한다.
- 거처통합의 경우 ▷ 철거되지 않은 두 거처가 하나로 통합될 경우에 해당된다.
- ① 거처번호 ▷ 주인거처의 거처번호를 기입하고, 통합된 거처번호는 삭제한다.
▷ 주인이 살지 않을 경우 거처번호가 빠르거나, 면적이 넓은 거처의 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 삭제된 거처번호는 다시 쓰지 않도록 한다.
- ② 거처의 종류 ▷ 현재란에는 거처의 종류를 기입하고 예상란에는 통합 후 거처의 종류를 기입한다.
- ③ 거처변동 시점 ▷ 통합된 날짜를 기입한다.
- ④ 가구수 ▷ 현재란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가구수를 쓰며, 예상란에는 거처 통합 후 입주 예정 가구수를 기입한다.
- ⑤ 비고 ▷ 기타 참고사항을 기입한다.
- [4] 특기사항** ▷ 기타 조사구의 특성 및 변동이유와 장래 변동 전망등을 기입한다.

연동표본 가구관리

I. 연동표본 가구관리

1. 연동표본 개요
2. 연동표본 교체조사구 선정
3. 연동표본 교체조사구 요도 및 가구명부 작성
4. 연동표본 가구관리명부

II. 전산 입력방법 및 행정사항

1. 전산 입력방법
2. 행정사항

I. 연동표본 가구관리

1. 연동표본 개요

가. 목적

- 응답자의 응답부담 경감
- 표본개편으로 인한 통계의 시계열 단절 방지
- 조사원의 매너리즘 방지

나. 기본방향

- 경찰 조사와 가계조사를 동일 가구에서 조사하는 다목적 표본
- 2005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 (인천과 경남은 2004년 5월부터 선행 도입)

다. 가구별 조사기간

- 기존의 5년에서 3년으로 축소
 - 2005년 1월 이후 교체된 가구에 대하여는 모두 3년 적용

라. 교체단위 및 교체 방법

- 교체방법 : 현 조사구의 비 조사구역으로 교체
- 교체단위 : 조사구내의 구역(5가구 기준)
- 한 개의 조사구내 가구를 완전 교체하는데 4개월 소요

마. 교체주기 및 교체량

- 경제활동인구조사
 - 매월 1/36 교체(약 900가구, 181개 조사구 중 1구역)
- 가계조사
 - 4개월 중 2개월 교체(3~4월, 7~8월, 11월~12월 교체)
 - 교체시 1/18 교체(약 450가구, 111개 조사구 중 1구역)

◇ 가계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교체 3개월째부터 실시 ◇

〈표 3〉 조사구내 교체방법

최 초		교체전 구역번호				교체후 구역번호			
		01	02	03	04	01-1	02-1	03-1	04-1
첫번째월	경 활		02	03	04	01-1			
	가 계	①	②						
두번째월	경 활			03	04	01-1	02-1		
	가 계	①	②						
세번째월	경 활				04	01-1	02-1	03-1	
	가 계		②			①-1			
네번째월	경 활					01-1	02-1	03-1	04-1
	가 계					①-1	②-1		

* ①과②는 가계조사에 해당

2. 연동표본 교체조사구 선정

가. 기본방침

-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연동그룹별로 같은 표본규모 유지
- 가계조사는 표본 개편시와 같은 연동그룹별로 동일 표본규모로 조정

나. 가계조사 표본 수 조정 기준

- 가계조사 연동그룹별 표본수 불균형 조정
 - 가계조사는 표본개편 후 조사환경 악화로 인하여 교체된 표본이 있어서 표본설계시의 연동그룹별 동일표본 규모를 유지하고 있지 못한 실정임
 -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연동그룹번호 대로 표본을 교체, 가계조사는 약간의 조정을 통하여 각 연동그룹별로 특성 및 동일 표본규모로 조정
- 가계조사 연동그룹별 표본수 조정 기준
 - 과대(과소) 연동그룹은 과소(과대) 연동그룹으로 이동
 - 이동시 표본 추출 시 적용한 분류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각 연동그룹별로 대표성 있는 표본이 되도록 함
 - 이동 후 가능하면 오랜 기간 후에 재 표본교체가 될 수 있는 연동그룹으로 이동

다. 가계조사 실시시기

- 정상적인 연동에 의해 교체되는 가계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교체 3개월째 01-1구역, 4개월째 02-1구역 순으로 가계조사 실시
- 연동표본 관련 가계조사구가 교체된 경우에는 교체된 조사구에서 4개월째부터 01-1, 02-1구역(약 10가구)의 적격가구를 대상으로 가계조사를 동시 실시
 - 가계조사구 자체가 옮긴 경우, 즉 그룹조정에 의한 교체 및 적격가구 부족으로 경찰만 하는 조사구에서 가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예) 가계조사구 211066이 그룹조정에 의해 211044로 옮긴 경우

- ☞ 2006년 3월분까지 211066 조사구에서 가계조사를 실시하고, 4월분부터는 211044 조사구의 01-1 및 02-1구역에서 동시에 가계조사 실시
- ※ 211044조사구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1월부터(01-1구역)로 순차적으로 조사를 함

- 도시 재개발, 근린공원 조성, 도로개설 및 적격가구 부족 등으로 조사구를 교체한 경우에는 교체된 조사구에서 모든 가구를 조사

예) 도시재개발에 따라 11111100 → 11111101로 조사구를 교체한 경우
 ☞ 만약 2006년 2월에 조사구를 교체한다면 2월까지의 교체 전 조사구에서 조사를 하고, 익월(3월)부터는 교체된 조사구에서 경찰, 가계구분 없이 모든 가구를 조사

3. 연동표본 교체조사구 요도 및 가구명부 작성

가. 교체조사구 요도

- 교체조사구의 전산요도 배부 및 제작성
 - 교체 대상 조사구 전산요도 배부
 - 단, 아파트 조사구는 전산요도 배부 제외

※ 조사구 요도 좌측 상단에는 조사구번호 및 인구총조사 번호, 우측 상단의 행정구역에는 행정구역명 및 분류부호를 반드시 기입

예) 조사구 번호

11010600 (009-1)

 행정구역

서울 종로구 효자동(1101052)

-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 빌라 및 다가구주택 등)은 배부된 전산요도 뒷면에 전개도를 작성
- 읍면 요도의 경우 전산요도가 여러 매인 경우는 조사구 요도(A3)를 활용하여 한 장에 작성
- 반드시 조사구에 대한 현지 확인을 통하여 현지실정에 맞게 요도보완
- 교체조사구 비구역의 조사구 경계확인 및 거쳐변동 사항 확인
 - 기존의 조사구 요도 작성요령 참고

- 교체조사구 가(假)구역 설정
 - 교체조사구내 가구역 설정시 서로 인접되도록 빠른 거처번호부터 가구 (구역 당 : 5가구 기준)를 균등하게 구역번호 부여
 - 조사구당 표본가구수는 20가구(± 2)를 기본으로 하며, 가계조사의 경우 조사구당 적격가구가 6가구 이상이 되게 구역을 설정

※ 읍면의 경우 적격 6가구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03-1, 04-1 구역으로 확대 설정하여야 하며, **확대한 경우에는 적격 5가구까지 가능**

- 구역번호 부여시 구 표본조사구 구역번호(01 ~ 04구역)는 그대로 두고 교체 구역에 해당되는 구역번호는 01-1에서 04-1까지 부여하고 나머지 비구역은 2자리 숫자(05구역부터)를 부여하여 구분
- 구역화 할 때는 각 구역간 거처수가 다르더라도 가구수는 균등하게 분할
- 거처번호는 고유번호이기 때문에 사유가 발생하면 마지막 다음 번호부터 부여

※ **교체조사구 현지 확인결과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사전에 지역통계과 가구표본 담당자에게 연락 취할 것**

나. 교체조사구 가구명부

- 실제로 확인된 표본조사구 요도를 가지고 가구가 누락 또는 중복됨 없이 가구명부를 작성
- 가구명부상의 가계조사대상 여부, 적격 또는 부적격 사유를 명확하게 기입
 - ☞ 적격 ⇒ 1.사무직~4.무직, 부적격 ⇒ 농가(01) ~ 기타(09)
- 연동교체와 관련된 조사구 번호 7째자리 「0」을 「1」로 변경
 - ☞ 가구명부 작성요령 : 『가구표본 관리지침서』 참고
- 가구명부 “⑤ 가구원 수” 는 반드시 기입
 - ⇒ 비구역 현지 실시시 가구에 상주하고 있는 모든 가구원 파악

- 가구명부 “⑩ 비교” 는 가구주를 제외한 15세 이상 가구원수와 산업·성별을 표시
예) 3:U(2)F(1)K(2)-15세이상 가구원 3명중 오직 여성 1명 건설업 남성 1명 금융업 여성 1명

다. 가계조사구 교체방법

- 연동표본 교체조사구의 가계조사는 01-1, 02-1구역(기준구역)에서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격가구 부족시 조사구역 확대
- 구 표본조사구에서 구역확대 된 조사구(01~04 구역)인 경우
 - ☞ 구 표본조사구의 01구역
⇒ 01-1구역으로 교체되는 시점(교체 3개월째)에서 03구역의 가계조사 중지
 - ☞ 구 표본조사구 02구역
⇒ 02-1구역으로 교체되는 시점(교체 4개월째)에서 04구역의 가계조사 중지
- 구 표본조사구에서 적격가구 부족으로 구역변경을 한 경우
 - ☞ 구 표본조사구의 03구역
⇒ 01-1구역으로 교체되는 시점(교체 3개월째)에서 03구역의 가계조사 중지
 - ☞ 구 표본조사구 04구역
⇒ 02-1구역으로 교체되는 시점(교체 4개월째)에서 04구역의 가계조사 중지
- 연동교체조사구가 재개발, 재건축, 적격가구 부족 등에 의해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동교체 2개월 전에 반드시 교체 신청

4. 연동표본 가구관리명부

가. 조사구 번호

- 연동표본으로 교체된 조사구는 ①~⑥까지는 변하지 않고, 7번째 자리(⑦)는 1로 입력

예) 연동 전

①	②	③	④	⑤	⑥
1	1	1	1	2	2
				⑦	⑧
				0	0

⇒

연동 후

①	②	③	④	⑤	⑥
1	1	1	1	2	2
				⑦	⑧
				1	0

- 연동교체와 조사구 교체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7번째와 8번째 모두 변경

예) 연동 전

①	②	③	④	⑤	⑥
1	1	1	1	2	2
				⑦	⑧
				0	0

⇒

연동 후

①	②	③	④	⑤	⑥
1	1	1	1	2	2
				⑦	⑧
				1	1

나. 주소

- 행정구역부호(③)는 반드시 한국표준 행정구역분류부호(7자리)를 기입
 -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번호나 표본조사구 번호를 기입하지 말 것
 - ※ 표본가구관리 평가기준 입력착오 감점(1건당) : 0.2~0.5
- 전화(또는 핸드폰)번호는 반드시 기입 할 것

다. 경제활동 대상여부

- 경제활동대상여부(⑧)의 「2. 불응」에 해당되는 경우 불응사유를 반드시 기입

<표 4> 불응사유별 코드번호

코드	불응사유	불응내용
1	사생활 노출기피	· 사생활 침해 등
2	면접거부	· 무조건 불응, 면접기피 등
3	매사에 불신	· 정부 정책 및 사회제도 등
4	연간조사 부담	· 사회통계, 부가조사 등에 의한 부담 등
5	가계조사 부담 가중	· 가계조사로 인한 경찰 조사 불응
6	바쁘고 귀찮아서	· 맞벌이 및 개인사업 등으로 불응
7	가정불화	· 이혼 등의 사유
8	환자가 있어서	· 질병, 출산 및 장애자 등 포함 등
9	기타	· 사업실패, 해고 및 무직 등

라. 가계조사여부

□ 정상적인 연동교체조사구 경우

- 기존 표본가구관리명부에서 경찰조사 구역(예: 01구역)이 교체된 후 3개월째 가계조사가 시작됨
 - 교체전과 교체후와 무관하게 가계조사를 실시하는 조사구역은 「⑩ 가계조사여부」를 「1. 경찰+가계」로 입력
 - ※ 가계조사를 실시하는 조사구역은 「1. 경찰+가계」로 표시
 - 조사구역 내 가구는 적격 및 부적격을 불문하고 「⑩ 가계조사여부」에 경찰 및 가계조사 여부를 반드시 입력

<표 5> 「⑩ 가계 조사여부」 입력방법

구분	교체전 (111181-00)	교체후 (111181-10)
▶첫번째 월	○ 01(가계), 02(경찰+가계) 구역의 ⑩은 「1.경찰+가계」로 입력	○ 01-1(경찰) 구역의 ⑩은 「2. 경찰」로 입력
	○ 03(경찰), 04(경찰) 구역의 ⑩은 「2. 경찰」로 입력	

▶두번째 월	○ 01(가계), 02(가계) 구역의 ㉑은 『1.경찰+가계』로 입력	○ 01-1(경찰), 02-1 (경찰) 구역의 ㉑은 『2. 경찰』로 입력
	○ 03(경찰), 04(경찰) 구역의 ㉑은 『2. 경찰』로 입력	
▶세번째 월	○ 02 구역(가계)의 ㉑은 『1. 경찰+가계』 로 입력	○ 01-1(경찰+가계) 구역의 ㉑은 『1.경찰+가계』로 입력
	○ 04 구역(경찰)의 ㉑은 『2. 경찰』로 입력	○ 02-1(경찰),03-1 (경찰) 구역의 ㉑은 『2. 경찰』로 입력
▶네번째 월		○ 01-1(경찰+가계), 02-1(경찰+가계) 구역 의 ㉑은 『1. 경찰+가계』로 입력
		○ 03-1(경찰),04-1 (경찰) 구역의 ㉑은 『2. 경찰』로 입력

□ 가계조사 조사구역(변경)이 확대된 조사구의 경우

- 모든 가구의 가계조사 여부는 『① 경찰+가계』에 표시해야 함

마. 주택소유관계

- 경찰조사만 하는 경우에도 「① 주택소유관계」까지 반드시 입력
- 표본설계(표본추출)시 특성항목으로 활용되므로 반드시 입력할 것

바. 가계 가구구분

- 가계 가구구분⑬의 『5. 부적격』에 해당되는 경우 부적격 사유기입

사. 「1인 가구 여부」

- 대상가구의 1인 및 2인 이상 가구 여부에 따라 「14 1인가구 여부」의 해당번호에 체크

아. 전입년월일 (17), 전출연월일 (18)

- 가구의 실제로 전입한 날짜 또는 연동교체가 발생한 날짜를 기입
 - 누락을 3개월 후에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 전입(전출)한 일자를 기입 할 것

자. 비고 (19, 20)

- 가구 및 가구원 변동이 있을 때와 연동표본 교체가 있을 때 기입
 - 연동교체에 따른 포함(44)
 - 연동교체에 따른 제외(94)

II. 전산입력 방법 및 행정사항

1. 전산입력 방법

가. 연동표본 교체로 하나의 조사구(연동전/연동후)에 담당자가 2명일 경우

- 현재와 같이 가구통합시스템에서 전산 총괄자가 사용자 설정작업을 하여 담당자 변경 (환경설정 ⇒ 사용자 설정 ⇒ 담당자 ID 일괄변경)
 - ☞ 동일한 조사구는 한 담당자가 담당하도록 조치할 것

나. 「② 조사구 번호」

- 연동표본 관련하여 대체된 조사구의 「② 조사구번호」의 7번째 자리를 1로 입력하고, 연동 전 조사구의 7번째 자리는 0으로 유지

예) 연동 전

①	②	③	④	⑤	⑥
1	1	1	1	2	2
				⑦	⑧
				0	0

⇒

연동 후

①	②	③	④	⑤	⑥
1	1	1	1	2	2
				⑦	⑧
				1	0

다. 「⑩ 가계조사여부」

- 경찰조사만 하는 조사구
 - 교체 전·후에 관계없이 표본가구관리명부 ⑩항을 「2. 경찰」로 입력
- 경찰조사와 가계조사를 동시에 하는 조사구
 - 연동으로 교체되어 경찰조사만 하는 구역은 「2. 경찰」로 입력,
교체 전·후와 관계없이 가계조사를 하는 구역은 「1. 경찰 +가계」로 입력

라. 연동교체에 따른 전출/전입 입력방법

- 경찰만 조사하는 구역의 전출/전입 날짜입력
 - 연동 전·후에 관계없이 해당 월의 초(1~5일 사이)로 전입/전출 입력
 - 「경찰+가계조사」를 동시에 조사하는 구역의 전출/전입 날짜입력
 - 연동구역의 경찰을 입력을 위해서 전입날짜는 월초(1~5일 사이)로 입력
 - 연동전 구역은 경찰이 연동되고 아직 가계조사를 하고 있으므로 전출 일자를 익익월 말(25~30일)로 입력
- ⇒ 가계조사는 경찰교체 후 3개월째 교체

- 연동표본 관련 그룹 조정에 의해 가계조사구가 교체된 경우
 - 교체 전 조사구 전출일자는 가계조사 마지막 월 25~30일경으로 입력
- 연동교체 표본조사구 중 재개발, 적격가구 부족 등에 따라 조사구를 교체한 경우
 - 표본조사구가 교체 된(공문 시행) 시점으로 전입/전출 날짜 입력
- 가구 및 가구원에 관한 사항의 「19, 20 비고」에 『연동표본 교체에 따른 포함(44)』, 『연동표본 교체에 따른 제외(94)』 코드를 반드시 입력

마. 가계조사 대상가구의 거주기간(전출입시)에 따른 입력방법

- 해당월 거주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
 - 「① 조사 담당자~⑮ 가계부 제출여부」 까지 입력해야 하며 다만, 「⑬ 가계 가구구분」이 1~4 이면 「⑮ 가계부 제출여부」 항목을 「3. 미제출」로 입력 하며 동시에 「⑯ 미제출 사유」를 입력
 - ☞ 「⑮ 가계부 제출여부」에서 「4. 대상외」로 입력하면 오류 발생
- 해당월 거주일자가 15일 미만인 경우
 - 「① 조사 담당자~⑮ 가계부 제출여부」 까지 입력해야 하며 다만, 「⑬ 가계 가구구분」이 1~4 이면 「⑮ 가계부 제출여부」 항목은 반드시 「4. 대상외」로 입력
 - ☞ 「⑮ 가계부 제출여부」에서 「3. 미제출」로 입력하면 오류 발생

바. 경찰조사와 가계조사의 「9 가구주에 관한사항」이 서로 다른 경우

- 「9 가구주에 관한사항」은 가구주 경제활동 상태를 묻는 항목이므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가구주 산업 및 직업으로 동일하게 작성하며, 「11 주택소유관계」부터의 사항들은 가계조사를 기준으로 입력

2. 행정사항

가. 경제활동인구조사 불응가구 현황

- 보고 기일 및 방법 : 매월 표본가구관리명부 입력시 동시 전산입력
- ※ 불응사유별 코드번호 참조

나. 경제활동인구조사 조사구역 조정 신청

- 조사구역 조정 신청 요건 (가구관리지침 참고)

<표 6> 경찰조사 조사구역 교체신청 양식

구 분	지방청 (사무소) / 출장소	조사구 번 호	현재 조사 가구수 현황				교체시 예상 가구수 현황				사 유	조정 요청
			01 구역	02 구역	03 구역	04 구역	01 구역	02 구역	03 구역	04 구역		
과 소 조사구	서 울	11112600	3	4	3	4	5	5	6	5	- 외국인 가구 - 리모델링에 따른 가구 통합	○

- 해당 조사구 요도(사본)를 담당자에게 FAX 송신할 것

다. 가계조사 조사구역 조정 신청

- 가계조사 조사구역 조정 신청 요건 및 신청양식 : 기존방식과 동일

라. 표본조사구 교체 신청

- 표본조사구 교체 신청 요건

- 조사구내 가구가 당해년도 내에 전체 철거 또는 철거 예정인 조사구

- 일부 철거 경우 조사구내 가구수가 40가구 이하인 경우만 해당
- 노후 아파트 철거 후 재건축 예정, 또는 소방도로 및 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이주 등
- 건축물 노후에 따른 집단 이주(도시 재개발)
- 행정구역 개편(분동 또는 편입)으로 조사구의 관할이 서로 다른 경우 단, 조사구 전체가 편입되는 경우 제외
- 지형지물의 심한 변동으로 조사구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 조사구내 가구들이 집단적으로 조사에 불응, 또는 신변 위협에 따라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등

<표 7> 표본조사구 교체신청 양식

지방청	조사구 번호	인구총조사 조사구 번호	행 정 구역명	가계조사 유 무	발 생 연월일	교 체 사 유	비 고
(예시) 서울	11112900	1120066 0091	서울 동작구 사당 4동	×	2005. 10. 24	· 아파트 재건축	

주 * 가계조사 유무 : 경찰+가계를 동시에 하는 조사구는 「○」 표시

마. 가계조사 1인가구

- 대상자
 - 15세이상 경제활동조사 대상인구
 - 이전소득만 있는 학생 1인가구 포함
 - 단, 농림어가, 부정기적 출타가구 및 외국인 제외
- 1인 가구인 경우 「⑭ 1인가구 여부」에서 “1”로 체크
- 적격가구 부족으로 3~4구역으로 확대한 조사구 중 조사구역 내에 1인 가구가 있을 경우 : 확대된 조사구내 모든 1인가구 조사
 - ※ 기존(2003년~2005년) 적격가구 부족으로 구역변경 및 구역확대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서울시 구별 조사구 현황 ♣

번호	구별	조사구수	가경	경	농가	담당인원	비고
전 체		208	126	81	1	-	
1	종로구	4	3	1		4	
2	중구	5	3	2		4	
3	용산구	4	2	2		3	
4	성동구	7	3	4		5	
5	광진구	9	7	2		6	
6	동대문구	8	5	3		5	
7	중랑구	9	6	3		7	
8	성북구	10	6	4		5	
9	강북구	7	5	2		5	
10	도봉구	6	4	2		4	
11	노원구	10	6	4		6	
12	은평구	9	4	5		5	
13	서대문구	7	4	3		5	
14	마포구	9	5	4		7	
15	양천구	9	6	3		6	
16	강서구	10	6	4		8	
17	구로구	8	5	3		5	
18	금천구	6	4	2		3	
19	영등포구	8	5	3		6	
20	동작구	7	5	2		4	
21	관악구	12	7	5		6	
22	서초구	9	5	3	1	6	
23	강남구	12	7	5		10	
24	송파구	13	7	6		6	
25	강동구	10	6	4		6	

경제활동인구 조사

I. 조사개요

1. 조사목적
2. 조사연혁
3. 조사대상
4. 조사대상기간 및 조사기간
5. 조사방법
6. 조사표류 종류

II. 조사업무 수행시 유의사항

1. 경제활동인구조사 일정
2. 일반적 유의사항

III. 조사표 작성방법

1. 조사표 구성
2. 조사관련 용어개념 및 정의

IV. 조사경제활동인구 조사 사례별 처리방법

1. 기본사항 판단사례
2. 활동상태 판단사례
3. 산업·직업분류 사례
4. 종사상 지위 분류 사례

V. 내검요령 및 자료처리 일정

I. 조사 개요

1. 조사목적

- 국민 경제활동(취업, 실업, 노동력 등)의 특성을 조사해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 ☞ 노동공급, 고용구조, 가용 노동시간 및 인력자원의 활용정도를 제공

2. 조사연혁

- 1957년~1962년: '노동력조사'로 내무부 통계국에서 실시
- 1963년 : '경제활동인구조사'로 개편,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현 통계청)에서 분기마다 면접조사 실시
 - 통계법(1962년 1월 15일 공포) 제2조에 의한 지정통계 제4호로 지정
- 1982년 7월 : 조사주기 변경(분기→월)
- 각종 부가조사 실시
 - 1997년말 경제위기 이후 실업자 급증에 따라 실업대책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부가조사 실시 (1998년 9월 및 12월, 1999년 6월 3차례)
 -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파견·용역근로, 호출근로 등 다양한 근로형태를 파악하기 위한 부가조사 실시 (2000년 8월, 2001년 8월, 2002년 3월 및 8월)
 - 청년층(15~29세) 실업자 증가에 따른 취업실태 파악을 위한 부가조사 실시(2002년 6월 첫 조사 실시이후, 2003년부터 매년 5월)
 - 고령층(55~79세) 인구에 취업실태 파악을 위한 부가조사 실시 (2005년 5월 첫 조사)

3. 조사대상

○ 조사지역

- 조사구 선정 :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10% 표본조사구 중 24,998 조사구(섬, 시설단위 조사구 제외)를 기본 추출단위 조사구로 설정

· 지역별 표본수에 따라 계통추출 실시 : 1,629 조사구

(동부: 1,242, 읍면부: 387)

- 표본조사구역 선정 : 표본조사구를 평균 5가구씩 묶어 구역으로 분할 후, 임의 추출된 구역을 기준으로 인접된 구역 4개 추출하여 표본조사구로 선정

○ 조사대상

- 표본 가구: 4개 해당구역 내 거처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가구
- 조사대상자: 표본가구 내에 상주하는 자 중 만 15세 이상인 자
- ☞ 매월 15일 현재 만 15세 이상인 자

예) 『2006년 1월 조사』의 경우 1991년 1월 14일 출생자까지만 포함

조사대상에 포함되는 자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입자 - 비혈연 가구원 ☞ 하숙, 동거 등의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역(사병, 장교 및 공익근무요원), 전투경찰(의무경찰포함) - 영외거주 군인 (직업군인, 상근예비역 등) - 외국인 - 해외상주 취업(학)자 - 요양소, 기도원 수용자

4. 조사대상 기간 및 조사기간

- 조사대상 기간 :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 7일간(日~土)
 - ☞ 조사에 특별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유가 있을 경우 별도 지침에 따라 변경
- 조사기간 : 조사대상 기간 다음 1주간
- 자료입력 및 내검 기간 : 조사기간 포함 2주간

5. 조사방법

- 담당직원이 각 대상가구를 방문하여 면접과 동시에 자료 입력 (PDA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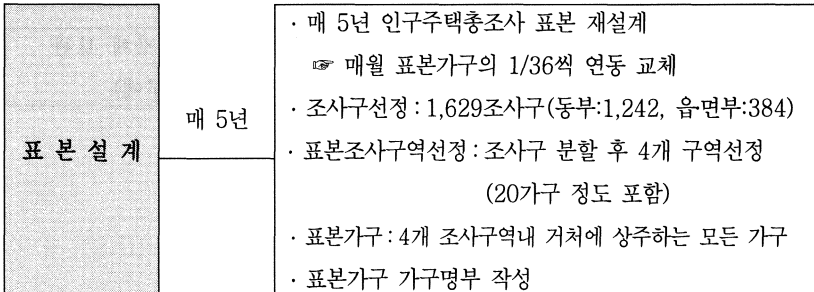
6. 조사표류 종류

- 가구관리 명부, 보조조사표, 경제활동인구조사 조사표, 조사구요도

II. 조사업무 수행시 유의사항

1. 경제활동조사 일정

□ 기획단계(본청)



조사담당자 교육	3월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요령에 대한 조사 담당자 교육 · 기타 필요시 수시 교육
조사표류 인쇄 및 배부	6월,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청(사무소)에 재고 및 향후 소요분 파악 · 소요량(부재가구 등 조사용) 산출 및 인쇄, 배부
전산프로그램 보완 및 개발	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대외자료 요청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 조사 및 입력(지방)

준비조사	매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가구 전출입사항 확인 및 변동내역 처리 ⇒ 가구관리명부 보완 등 (지역통계과: 표본가구관리명부 작성요령서, 가구관리 지침서 참조) · 전입가구에 대한 조사협조 당부 · 보조조사표 배부: 조사대상기간 전 1주간
본조사 입력	매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기간: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간 · 본조사 기간: 조사대상기간 다음 1주간 · 대상가구를 방문하여 조사와 동시에 PDA에 입력
자료입력 마감	매월 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입력 및 내검: 본조사 기간을 포함한 2주간
입력자료 점검	매월 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청(사무소)별 총 입력가구수 파악 · 자료 오류 유무 확인 및 보완
조사표류 보관	조사실시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청·사무소(출장소분 포함) 자체 보관 (CAPI 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가구에)

□ 결과분석 및 공표

<p>결과분석</p>	<p>매월 5~15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활동인구 및 특성별 취업자, 실업자 동향 등 결과표 작성·분석 · 관련 참고 자료 수집·정리
<p>결과공표</p>	<p>매월 15일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전국 『고용동향』 보도자료 작성 및 공표 · 시·도별 고용동향 지방청(사무소)에서 작성 및 공표 ※ 연간 공표 일정 홈페이지에 수록
<p>월보발간 (본청)</p>	<p>매월 25일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별 취업자, 실업자 통계표 작성 · 전국 및 16개 시도별 총괄표 작성 · 행정기관 및 각종 공공기관에 배부
<p>연보발간 (본청)</p>	<p>매년 5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분기 및 연간·전국 및 16개 시도별 통계표 작성 · 원고 작성, 교정 및 인쇄 · 행정기관 및 각종 공공기관에 배부

2. 일반적 유의사항

가. 응답자 선정시 유의사항

- 가구내용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 선정 : 가구주, 가구주의 배우자 등
- 가구의 책임 있는 응답자를 선정, 조사 : 가구원마다 개별적으로 직접 면접조사가 원칙이나, 직접 면접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가 있음
 - ☞ 비 혈연관계 등 동거인에 대한 조사는 가급적 본인을 면접 직접조사
- 책임 있는 응답자를 면담하기가 극히 어려운 경우 부득이 전화조사를 실시하거나 자기기입식으로 조사
 - ☞ 반드시 미비점을 다시 확인·보완해야 함

- 조사방법(자기기입식, E-mail, FAX 등) 및 응답자구분(가구원 관리번호 또는 관계 등을 식별이 가능하게 기재)을 조사표 표지의 조사담당자 기입사항에 기입
 - ☞ 단, 조사대상자 전원을 직접 개별 면접조사한 경우 응답자구분 및 참고사항 명시

나. 조사 전반적 유의사항

- 준비조사 기간 동안 대상가구를 방문하여 가구변동을 사전에 확인
- 가구원별로 조사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가구원의 조사순위에 따라 일련번호 작성 후 면접조사 실시
- 가구주가 영외거주 직업군인이어서 조사에서 제외되는 경우
 - ☞ 다음 순위 가구원부터 일련번호 01을 부여함
- 조사대상주간 중에 거주하다가 본조사 기간에 전출하는 가구는 전출 전 조사가 원칙
 - 본조사 기간에 전출입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전출가구를 조사하고, 전입가구는 다음달에 조사
 - ☞ 이미 전출하고 없을 경우 해당 가구에 전입한 가구를 조사
- 조사상 해결곤란한 문제점, 특별한 사고(질병 또는 기타사유)로 정상적인 조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 지시를 받음
- 비밀보호 의무
 -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이나 가구에 대한 내용을 누설·도용한 경우 통계법(제14조 및 제23조)에 의거 처벌(3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

- 조사표는 먼저 『관리사항』 기록 후, 기본항목 순으로 질문하여 작성하는 것이 원칙
- 대상외 가구는 관리사항만 작성 후 해당사유를 기록하여 별도 취합 보관
 - 만 15세 미만 가구원만으로 구성, 만 15세 이상인 제외자로 구성된 가구
 - ☞ 예) 소년소녀가구,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사선처리(조사표상 해당되지 않는 항목 및 질문이 중간에 종결시)
 - 그 항목부터는 좌상에서 우하방향으로 사선(\)처리
- 조사가 완료된 조사표는 내용상의 모순이나,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 내용을 검토
 - ☞ V. 내검요령 및 자료처리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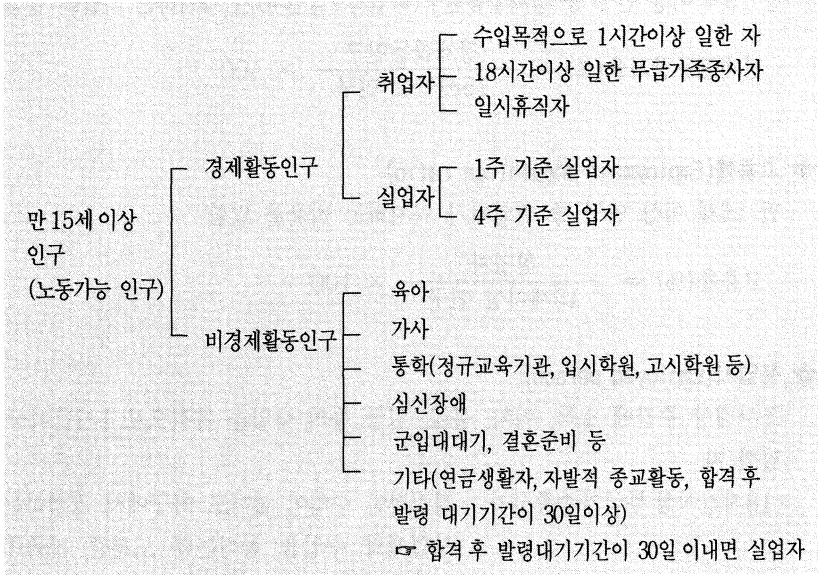
Ⅲ. 조사표 작성방법

1. 조사표 구성 (조사항목수 : 35개 항목)

구 분	해 당 항 목	2003년 개편	2006년 수정
기본항목 (6개)	1. 가구원 관리번호 2. 가구주와의 관계 3. 성별 4. 생년월일 5. 교육정도 6. 혼인상태	사별, 이혼통합	사별, 이혼구분
확인항목 (5개)	7. 활동상태 8. 취업여부 9. 일시휴직여부 및 이유 10. 1주간의 구직여부 11. 4주간의 구직여부		지문 어구수정 (9항)
취업자 항목 (6개)	12. 부업여부 13. 취업시간 14. 36시간 미만 취업사유 15. 추가취업 또는 전직희망 여부 16. 추가취업 또는 전직가능성시기 17. 추가취업탐색여부	항목추가(12항) 주/부업 구분 (13항) 통합(16항)	
실업자 항목 (7개)	18. 취업가능성 19. 구직경로 20. 구직기간 21. 희망고용형태 22. 희망근무형태 23. 취업제의여부 24. 미취업사유	공공, 민간구분 (19항) 항목추가(23,24)	
비경제 활동인구 항목(4개)	25. 취업희망여부 26. 취업가능성 27. 비구직사유 28. 지난1년간 구직경험여부 및 최근 구직시기		
기타항목 (7개)	29. 전직유무 및 이직시기 30. 이직이유 31. 산업·전직 산업 32. 직업·전직 직업·종사자 규모 33. 종사상 지위 34. 현 직장 취업시기 35. 고용계약여부기간	항목 추가 (34,35항)	직업소분류 조사 (31항) 지문어구수정 (34항) 계속근로가능성 삭제(35항)

▷ 2005.1. : 일부항목(7, 8, 14, 16, 20, 24, 27, 30)관련 질문어구 및 선택항목 수정 또는 추가

2. 조사관련 용어개념 및 정의



◆ 15세이상 인구(Population 15 years & over)

매월 15일 현재 만 15세 이상인 자

예) 『2007년 1월 조사』의 경우 1992년 1월 14일 출생자까지만 포함

◆ 경제활동(Economic action)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수입이 있는 일을 행함을 뜻함

☞ 수입이 있더라도 다음의 활동은 경제활동으로 보지 않음

- ① 법률에 위배되는 비생산적인 활동(예: 도박, 매춘 등)
- ② 법률에 의한 강제노역 및 봉사활동
- ③ 경매, 경륜, 증권, 선물 등 투자활동

◆ 경제활동인구(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 동안 생산업무를 위해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는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를 말함

◆ **경제활동참가율(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만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

$$\cdot \text{경제활동참가율}(\%) = \frac{\text{경제활동인구}}{\text{15세이상 인구}} \times 100$$

◆ **고용률(Employment-population ratio)**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

$$\cdot \text{고용률}(\%) = \frac{\text{취업자}}{\text{15세이상 인구}} \times 100$$

◆ **취업자(Employed person)**

조사대상 주간(1주일)에 소득, 이익, 봉급, 임금 등의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이상 일한 자

- 18시간이상 무급가족종사자 : 직접적인 수입이 없어도 가구에서 경영하는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도와준 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
 - ☞ 일시휴직자도 취업자에 포함

◆ **주업과 부업의 판단**

조사대상 주간의 취업시간을 기준으로 가장 많이 일한 것을 주업으로 판단

· 주업(Main job) : 주된 직업(일), 본업

- ☞ 매일 일하는 장소와 고용주가 바뀌는 경우는 모든 일을 포함하여 주된 일 한가지만 하는 것으로 봄

예) 가사서비스 종사자, 건설현장 일용자

· 부업(Secondary jobs) : 본업 외에 따로 가지는 직업(일)

- ☞ 두가지 이상의 일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

예) 낮에는 기업체에서 사무직으로 근무(주업)하고 퇴근후 다단계판매 등 네트워크 마케팅업체(암웨이, 엘트웰 등) 일(부업)을 함

◆ 일시휴직(Temporary absence from work)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대상 주간에 일시적 병, 일기불순, 휴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전혀 일하지 못한 경우로 일시휴직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복귀 가능해야 함

☞ 무급휴직이라 하더라도 복귀확실하면 취업자

무급이면서 복귀가 불투명한 장기(6개월 이상)휴직인 경우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판단

◆ 무급가족종사자(Unpaid family workers)

동일가구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 농장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경우

☞ 비혈연가구원의 일을 돕거나, 가구를 달리하는 가족일을 돕는 것은 해당되지 않음

☞ 무급가족종사자는 취업시간에 따라 취업자여부 판단

· 18시간이상 : 취업자

· 18시간미만 : 실제 활동상태에 따라 구분

◆ 임금근로자(Wage & Salary workers)

자신의 근로에 대해 임금, 봉급, 일당 등 어떠한 형태로든 일한 대가를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통상 상용, 임시, 일용근로자로 구분됨

◆ 상용근로자(Permanent employees)

- 고용계약 설정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고용계약 미설정자는 소정의 채용절차에 의해 입사해 인사관리 규정을 적용받는 사람

◆ 임시근로자(Temporary employees)

- 고용계약설정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 고용계약미설정자는 일정한 사업(완료 1년 미만)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경우

◆ **일용근로자(Daily workers)**

임금근로자중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를 말함

☞ 일일단위로 고용되어 근로대가를 일급으로 받는 경우 (파출부 등)

사업체에서 제공한 원료 및 반제품을 받아다가 가정에서 하청작업하는 형태

※ 원료 자체를 직접 구입하여 가정에서 작업하면 자영자로 분류

◆ **비임금근로자(Unpaid workers)**

자영자,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 형태의 근로자에 해당

◆ **자영업주(Self-employed worker)**

고용주 및 자영자를 합친 개념임

◆ **자영자(Own account worker)**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자기 책임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을 말함

◆ **고용주(Employer)**

한 사람 이상의 유급 고용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 사업규모에 상관없이 임금을 주는 종업원을 채용하고 있는 경우는 포함

◆ **산업(Industry)**

취업자 또는 전직자가 속한 사업체의 주된 경제활동 내용

◆ **직업(Occupation)**

취업자 또는 전직자가 종사한 일의 기능별 종류를 말함

◆ **종사상의 지위(Status of workers)**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등과 같이 취업자가 실제로 일하고 있는 신분 내지 지위 상태를 말함

◆ **적극적 구직활동(Active job-searching)**

단순히 구직광고를 보는 등의 소극적인 활동이 아니라, 전화, 방문, 구인광고 응모, 원서접수 등 구체적인 행동이 수반되는 경우를 구직활동으로 보며,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됨

◆ **18시간미만 취업자 중 추가취업희망자**

18시간미만 취업자 중 경제적 이유(일거리가 없거나 사업부진)로 18시간 미만 일하였으면서 추가 취업을 희망하는 자

◆ **실업사유별 실업의 종류**

- 자발적실업(voluntary unemployment)

일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재의 근로조건에서 일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

예) 직업 바꾸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음. 보다 나은 일 자리를 찾으면서 당분간 실업상태에 있음

- 비자발적실업(involuntary unemployment)

일할 능력도 있고 현재의 근로조건에서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 **실업률(Unemployment rate)**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

$$\cdot \text{실업률}(\%) = \frac{\text{실업자}}{\text{경제활동인구}} \times 100$$

◆ **실업자(Unemployed person)**

15세 이상 인구중 조사대상기간에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일을 하지 못하였으며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말함

· 1주기준 실업자: 구직활동 여부 파악시 대상기간을 1주간으로 적용

· 4주기준 실업자: 구직활동 여부 파악시 대상기간을 4주간으로 적용

◆ 비경제활동인구(Not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만15세 이상 인구중 대상기간에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들은 주된 활동상태에 따라 가사, 육아, 취업준비, 통학, 연로, 심신장애, 기타 등으로 구분

◆ 구직단념자(Discouraged workers)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일할 능력은 있으나 아래의 사유(노동시장적 사유)로 지난 4주간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자

- ① 적당한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전공경력·임금수준·근로조건, 주변)
- ② 지난 4주간 이전에 구직하여 보았지만 일거리를 찾을 수 없어서
- ③ 자격이 부족하여(교육기술 경험 부족,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다고 고용주가 생각할 것 같아서)

☞ 향후 노동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인력이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참고-1 농가의 정의

♣ 농가란? 가구주의 생업(또는 주된 업)이 농업인 가구를 말함

☞ 산업분류 01 및 02, 직업분류는 612·621·921에 해당

예) 자급농 제외, 가구주가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비농가 처리

- ▶ 가구주는 그 가구를 대표하고 가계의 지출에 관한 결정권을 가진 생계책임자
- 가구주가 농사일을 하고, 농한기에는 한시적으로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일하는 경우는 농가로 구분
- 가구주가 겸업을 하고 있는 경우, 즉 농사를 지으면서 틈틈이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경우 농가로 처리하며, 다른 일의 종사상 지위가 상용일 때에는 다시 확인하여 농가비농가를 구분
- 가계조사, 농업총조사 등의 구분과는 다르므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침에 따라 농가·비농가를 구분해야 함
- 예) 가구주가 농업 또는 조경식재 종사 임금근로자일 경우 ⇒ 가구구분은 농가
건설현장의 조경관련업무(조경지반공사등)에 종사하는 경우 ⇒ 비농가

♣ 일하였음이란 ?

임금이나 이윤을 목적으로 일한 사람과 가족(동일 가구내에 거주하는 혈연, 혼인, 양자에 의한 혈연 관계)이 경영하는 사업체 또는 농장에서 무보수로 일한 사람

☞ 무급으로 동일 가구내 비혈연 가구원의 일 또는 혈연관계라 하더라도 생활근거를 별도로 달리 하는 가구원의 일을 돕는 것은 무급가족 일로 볼 수 없으므로 활동상태를 다시 확인

- 일한 대가로 현금 또는 현물(식사, 주거 또는 곡물제공)을 받는 경우
현금 급료나 봉급을 받고 하는 일, 현물급료(주거제공과 식사제공 및 곡류포함)를 받고 하는 일과 팁을 받고 하는 일도 포함
- 원재료를 제공한 사업체가 마련한 장소에서 작업을 행하여 일한 분량대로 돈을 받는 샅일의 경우
- 원재료를 제공받아 개인 가정에서 가공활동을 하고 완료한 일의 분량에 따라 돈을 받는 샅일의 경우
- 자기 자신의 사업장이나 농장을 가지고 이윤을 목적으로 일을 한 경우 또는 전문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수료를 받고 일하는 경우
예) 하숙운영, 미장원 운영, 법률사무소 운영, 농사짓는 일, 양계장 운영 및 행상이나 노점상 등
- 소득의 적자 여부를 불문하고 조사대상주간에 실질적인 소득을 올리지 못했으나 계속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시간을 보낸 경우
- 농림어업 사업체를 가진 사람이 파종, 비료살포, 살균, 어획활동 등 실질적인 농림어업활동을 하지 못했으나 농기구 손질, 수선 등으로 시간을 보낸 경우
- 서로 노동력을 교환하는 형식의 활동인 품앗이(주로 농가에서 이루어짐)

♣ 일하였음으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

- 법률에 위배되는 비생산적인 활동(예 : 도박, 매춘 등)
- 법률에 의한 강제노역 및 봉사활동
- 경매, 경륜, 증권, 선물 등 투자활동

◇ 불법취업자 조사여부

- ☞ 불법 취업자(자격증 없는 간호사, 의사 등)의 활동상태는 본인의 확인 없이는 알 수 없는 사항이므로 구분하지 않고 조사

◇ 자영업을 준비하는 자의 활동상태 구분 예시

- ☞ 취 업 : 자기 사업장의 확보로 개업을 위한 물건 주문, 물건을 진열하는 행위 등
- ☞ 구직활동 : 사업계획의 확정 및 자금확보 후 사업장 물색, 사업장에 대한 인허가 취득준비와 물건 등을 구입하였거나 영업개시를 못하고, 허가신청후 기다리는 경우도 포함

♣ 직장이란 ?

직장은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함. 다만, 계절적인 근로자의 경우 현재 해당 계절에 있고, 조사대상주간에 해당계절에 속하는 경우에만 해당

- ☞ 조사대상주간에 일하지 않은 무급가족종사자, 호출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예: 파출부, 운전사 등)는 직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음
- ☞ 직장이유무는 일시휴직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 직장이 있지만 일하지 않은 경우에만 일시휴직으로 봄

◇ 직장으로 간주되는 경우

- 토요일, 일요일에만 정기적으로 돕는 소매활동
- 가정에 고용되어 봉사하는 가사서비스(가정부 등)
- 해당 계절에만 일하는 계절적 취업자 (예 : 스키강사, 수상안전요원 등)
- 일감을 가져다 자기집에서 샅일하고 있는 경우
사업체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조사대상기간에 일은 못하였지만 매월 단위로 볼 때 계속 일해왔으며(취업의 계속성), 앞으로도(30일이내) 계속하여 일할 것이 확실한 경우
- 방학을 맞이한 학교 교사

◇ 직장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 직업소개기관에 등록하고 호출되기를 기다리는 사람
(파출부, 일용노무자 등)
- 비수기의 계절적 취업자 - 복귀할 직장이 확실하게 없는 사람
- 무급가족종사자로 조사대상주간에 일을 하지 않는 사람
※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는 일시휴직이 나올 수 없음

♣ 자기사업장이란 ?

자기자본을 투자하여 자기 영업소를 유지하고 있거나, 상당한 가치를 가진 자기소유의 기계장비를 가진 경우를 말하며, 소속이 없더라도 개별 활동을 하는 경우도 해당 예) 작가, 화가, 배우 등

◇ 자기사업장으로 간주되는 경우

- 사무실, 상점 또는 자기 영업장소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자기 장비를 가지고 가내수공업하는 경우
- 전화서비스, 광고물 설치, 광고전담 배포 등으로 통한 사업광고
- 자기 장비로 농사짓는 경우

◇ 자기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집에서 하는 가사서비스 활동은 임금근로자로 간주
- 사업장비가 없이 가구를 상대로 단순노동을 제공하고 일당을 받는 경우
- 목수 등이 가구를 상대로 하는 소규모 수리활동

♣ 무급가족종사자의 취업시간 판단예시

1. 무급가족일만 한 경우: 취업시간(18시간기준)을 기준으로 취업자로 또는

10 구직활동 여부를 조사

2. 무급가족일과 수입있는 일을 같이 한 경우

무급가족종사자 일, 수입이 있었던 다른 일 중 취업시간 많은 것을 『주업』으로, 나머지 일을 『부업』으로 판단

예1) 수입있는일 30시간 : 주업 30, 무급가족일 10시간 : 부업 0으로 입력

☞ 무급가족일이 18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취업자로 간주

예2) 무급가족일 30시간 : 주업 30, 수입있는일 10시간 : 부업 10으로 입력

예3) 수입있는일 30시간 : 주업 30, 무급가족일 20시간 : 부업 20으로 입력

※ 비임금근로로 2가지 이상 일을 하는 경우는 부업으로 인정되지 않음

⇒ 여러가지 일 중 적어도 1개이상 임금근로자로서 일을 하는 경우에만 주업, 부을 구분하여 판단함

예) 자영자로 농업 40시간, 자영자로 어업 10시간을 한 경우 ☞ 주업: 50시간

♣ 매일 일하는 장소 및 고용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

두가지 이상의 일을 가진 것으로 보지 않음, 일한시간을 모두 합하여 주업으로 기입

예) 가사도우미, 건설공사현장의 일용근로자 등

⇒ 『13』 취업시간 항목에서 『1. 주업』, 『3. 총계』에 동일시간 기입

♣ 매일 일거리가 변하여 동일한 일에 대한 시간을 구분하기 어려운 일용근로자

일의 내용에 상관없이 1주간 일한 시간을 모두 합하여 『1. 주업』, 『3. 총계』에 동일시간 기입

♣ 구직알선 의뢰 후 지속적으로 결과를 확인한 경우에만 구직기간에 포함

· 친지에게 부탁 후 1개월이 경과하도록 확인도 하지 않은 경우

☞ 구직활동기간으로 간주하지 않음

· 실업상태에서 취업자 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변경된 기간은 해당이 되지 않음

· 실업상태에서 연속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기간만 계산

예) 3개월간 구직활동 후 일거리를 찾아서 며칠간 일하고 그만 둔 후, 다시 구직활동을 시작하여 실업자가 된 경우

☞ 최근 일을 그만두고 구직활동을 다시 시작한 시점부터 계산

실업자(3개월 구직)→비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1개월 구직)

☞ 구직기간은 1개월로 계산

- ♣ 정부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기관명만으로 산업을 구분할 수 있으나, 민간사업체 또는 민간기관과 같이 현업을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활동을 명시

예) ◆ 사업체명

- 한국자산관리공사
- 한국담배인삼공사

◆ 사업체의 주된 활동

- 부실채권 매수, 매각, 공매 대행
- 담배, 인삼 제조

♣ 여러 가지 산업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체

- 사업체의 각 활동들이 별도 장소에서 수행되는 경우 응답자가 속한 사업장의 수행활동을 기입
- 한 장소에서 여러 가지 산업활동이 수행되는 경우 주된 산업활동을 기준으로 기입

♣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구분

- 사업체의 주된 활동이 제조공장이면 다른 제조업체나 도·소매업체에 아무리 많은 양의 제품(자사제품)을 팔더라도 그 사업체는 제조업
- 도매업은 소매업체 또는 다른 도매업체에 제품을 되팔기 위하여 많은 양의 제품을 사들이는 경우
- 소매업체는 주로 가정에 소비용 상품을 파는 경우
- 제조업체의 본사나 공장에서 분리된 별도의 장소에 있는 판매·영업소는 판매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으로 분류 기입

예1) 대리점 또는 지점 ☞ 본사명과 지점명을 같이 기입

삼성전자 광주대리점, 온누리여행사 강남지점

예2) 제조업 : 상자를 제조하는 경우

☞ 종이상자 제조, 나무상자 제조, 금속상자 제조

♣ 외판 형태의 일에 종사하는 자

- 자본 투자 없이 소속 회사로부터 정기적인 보수를 수령 ☞ 임금근로자로 분류
- 자기자본을 투자하고 고정된 보수를 지급 받지 않음 ☞ 자영자로 분류
- ※ 자본의 투자권 독립된 점포 소유, 판매할 물건을 자기자본으로 구입하는 등을 의미함

♣ 기사종사자 ☞ 일용근로자

- 전문적 일을 수행할지라도 개인가정에 소속되어 있을 경우
- 근로의 대가를 일급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사람(일단위 고용) 예) 파출부등

♣ 단순노무자 ☞ 일용근로자

- 사업체를 대상으로 일을 수행하는 자영자라도 단순한 작업에 불과한 사람
- 일정한 장소 없이 돌아다니며 일한 대가를 받는 사람 예) 지게꾼, 굴뚝 청소부 등

♣ 행상, 노점상 ☞ 자영자

- 자기계정으로 장사를 하며 사업장 없이 떠돌아다니는 행상 예) 본인의 차로 야채판매, 의류행상 등

♣ 가내작업 ☞ 일용 또는 자영자

- 일 용 : 사업체에서 제공한 원료 및 반제품을 받아다 가정에서 하청작업을 하고, 일한 만큼 수수료를 받는 경우
- 자영자 : 원료 자체를 직접 구입하여 가정에서 작업하는 경우

♣ 다단계 회원모집인 ☞ 임시 또는 일용

- 기타서비스관련 단순노무자로 분류되어 임금근로자임 예) 암웨이 디스트리뷰터

♣ 성직자

- 승려, 목사, 신부 등 성직자는 임금근로자로 분류. 단, 교회나 사찰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곳에서 수수료를 받고 종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자영자

1. 인문·사회계열

1) 인문계열

- 어문학: 국문·노문·독문·불문·영문·일문·중문·한문학과
- 인문학: 국사·사학·신학·중국·철학과

2) 사회계열

경영·경영정보·경제·법학(공법학, 사법학과 포함)·관광경영·광고홍보·국제관계·농업경제·무역·문화정보·사회복지·사회·신문방송·심리·아동·정치외교·지역개발·행정학과·통계학(일부)

2. 예·체능계열

- 1) 예술학: 공예·관현악·교회음악·국악·동양화·미술·산업디자인·서양화·성악·음악·작곡·조소·피아노·회화과

- 2) 체육학: 무용·사회체육·체육·태권도학과

3. 사범계열

가정교육·국민윤리교육·국어교육·미술교육·상업교육·수학교육·역사교육·영어교육·유아교육·음악교육·지리교육·체육교육·컴퓨터교육·한문교육과

4. 자연계열

- 1) 이학: 물리·미생물·생물·생화학·수학·유전공학·통계(전산통계학·계산통계학과 포함)·전산학·화학과

- 2) 농림학: 농생물·농화학·산림자원·수의학·식품공학·원예·조경·축산학과

- 3) 수산해양학: 해양·수산학과

- 4) 가정학: 가정관리·가정·식품영양·의류·의상학과

5. 공학계열

건축(공)학·고분자공학·공업화학·금속공학·산업공학·섬유공학·자원공학·전기공학·전자공학·전파공학·정보통신공학·제어계측공학·컴퓨터공학·토목공학·화학공학·환경공학과

6. 의약계열

- 1) 의학: 간호학·의예(학)·치의예(학)·한의예(학)·건강관리·물리치료·방사선·안경광학·응급구조학·재활학·치기공·치위생과

- 2) 약학: 약학·제약·한약학과

IV. 경제활동인구조사 사례별 처리방법

1. 기본사항 판단사례

사 례	해 설
<p>Q1 가구주 선정기준은 생계를 책임지고 소득이 많은 자를 가구주로 하고 있는데, 이 중 한 조건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 가구주 결정 방법은?</p>	<p>A1 생계책임자인 가구주가 소득이 없고 가구원 중에 취업자가 있으면 취업자를 가구주로 하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자였던 가구주가 일시적으로 경제활동상태(취업자→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가 바뀌는 경우 가구주를 변경하지 않음 - 생계책임이 있는 가구원의 소득이 비록 타 가구원의 소득보다 적다할지라도 생계책임 가구원이 가구주가 됨
<p>Q2 아버지가 무직이면서 퇴직연금으로 생계를 거의 책임지고 장남의 급여액은 개인저축 및 용돈으로 충당하고 소액을 생활비로 줄 경우 가구주 선정방법은?</p>	<p>A2 실질적 가계책임은 아버지가 지고 있으므로 아버지를 가구주로 조사</p> <p>※ 가구부문 통합시스템에서 가계조사 가구주 개념과 불일치할 경우 운영 편의상 가계조사 기준에 맞춰 조사</p>
<p>Q3 배우자가 무단가출했을 경우 혼인상태 처리방법은?</p>	<p>A3 무단가출했을 때 가출한 달로부터 약 1개월 정도 상황 파악후 귀가하지 않으면 이혼(재결합이 불가능한 별거)로 간주하여 『4. 이혼』으로 처리</p>
<p>Q4 육해공군 등 사관학교의 계열 구분 및 보건전문대학의 계열구분은?</p>	<p>A4 조사대상자가 소속된 학과에 따라 구분</p>
<p>Q5 가구원의 무단가출후 행방을 알 수 없을 때는?</p>	<p>A5 1개월 이상인 경우 전출로 처리</p>

2. 활동상태 판단사례

사	해
례	설
<p>Q1 자녀보조로 생계를 유지하는 할머니가 출가한 딸의 분식점에 가끔 가서 집안일을 돌봐주고 생계보조를 받는 경우 할머니의 활동상태는?</p>	<p>A1 가사를 돌봐 주고 있는 경우 식사 등이 제공되고 생계비를 보조받고 있다면 이를 일을 돌봐 준 대가로 봐서 취업자로 조사</p>
<p>Q2 고등학교 학생이 단과학원에서 철판 청소를 해주고 본인은 영어, 수학을 무료로 수강하는 경우 활동상태는?</p>	<p>A2 취업자로 조사</p>
<p>Q3 할머니가 자기 손자를 돌봐주고 보수를 받는 경우는?</p>	<p>A3 손자를 돌봐 주는 일을 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형태에 해당되므로 취업자로 조사</p>
<p>Q4 초중고등학교에서 급식담당(주방일) 하는 주부가 겨울방학 또는 여름방학 전까지 일하고, 방학중(1월, 8월)에는 전혀 일을 하지 않은 경우 방학기간 중 활동상태는?</p>	<p>A4 조사대상기간 중 일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정한 직장이 있고, 앞으로도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이 확실하기 때문에 취업자로 조사하며, 방학 중에는 전혀 일을 하지 않으므로 일시휴직자로 조사</p>
<p>Q5 건축업자가 건물 완성 후 매매가 되지 않고 있어 현장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매매상담 전화만 하고 있는 경우 활동상태는?</p>	<p>A5 취업자로 조사</p>

사	례	해	설
Q6	<p>목수가 자기집을 짓는 경우 경제활동 상태는?</p>	A6	<p>비록 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 고유기능인 본업을 살려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취업자로 조사하며, 취업시간은 조사대상주간의 일한 시간을, 종사상 지위는 자영자로 조사</p>
Q7	<p>정기적으로 월초나 월말에만 일을 하는 사람으로 조사대상주간에는 항상 집에서 쉬는 경우 활동상태는?</p>	A7	<p>정기적으로 조사대상주간이외에 일을 하는 경우는 취업의 계속성이 있는 것이므로 일시휴직자로 조사</p>
Q8	<p>주식투자를 위해 매일 증권회사 객장에서 생활하는 경우는?</p>	A8	<p>별다른 일 없이 주식투자만 하는 경우는 수입이 있다 할지라도 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p>
Q9	<p>비경제활동인구가 선거에 출마한 경우 활동상태는?</p>	A9	<p>선거에 출마한 것은 수입있는 일에 종사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경제활동인구로 조사 (7번 항목에서 기타로 기입) - 단, 보수를 받고 선거운동원으로 일한 것은 취업자로 분류</p>
Q10	<p>자기집 앞 텃밭에서 본인 및 가족의 소비 목적 및 소일거리로 곡식 및 채소 등을 가꾸는 사람의 활동상태는?</p>	A10	<p>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일한 것은 취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비경제활동인구로 조사</p>

사 례	해 설
<p>Q11 취직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는?</p>	<p>A11 구직활동으로 간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합격후 다음 시험에 대비하는 경우 다른 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계속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는 실업자, 일정 기간 후에 예정되어 있는 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시험공부만 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조사 - 시험에 합격하였으나 발령을 기다리는 경우 대기기간이 30일 이내는 실업자로, 30일 이상일 때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조사
<p>Q12 건설장비임대업자(운전자 딸린)가 겨울에 일거리가 없어 일을 하지 못하고 다른 일을 찾아 구직하였을 경우의 활동상태는?</p>	<p>A12 자기 장비를 가지고 취업활동을 하다가 계절적인 요인으로 일거리가 없어 일을 하지 못하고 구직활동을 한 경우는 실업자로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절적 취업자의 경우 현재 일시적 병, 휴가, 기계고장 및 분실 등으로 일을 못했을 때만 일시휴직으로 처리
<p>Q13 부모가 조사구외에서 분식점을 하고 있는데 조사구내에 사는 딸이 매일 분식점 일을 도와 주고 있는 경우 활동상태는?</p>	<p>A13 혈연가족이라도 따로 살며 일을 도와줄 때는 밥값, 용돈 등에 해당하는 돈을 받고 있는 경우에 취업자로 조사하나 아무 것도 받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히 부모님을 도와 주는 것으로 생각하여 무급가족종사자로 조사하지 않도록 유의 - 무급가족종사자는 반드시 가구내 함께 사는 가구원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일해야 함.
<p>Q14 조사구내에 사는 부인이 조사구외에 사는 남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매일 일하는 경우 부인의 활동상태는?</p>	<p>A14 매일 부인이 식당에 가서 일하는 것은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부인을 취업자로 보며 종사상 지위는 함께 일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자영자로 기입</p>

3. 산업·직업분류 사례

사 례	해 설
<p>Q1 파견자의 산업분류 구분은?</p>	<p>A1 소속된(월급 지급되는) 사업체의 산업활동으로 분류</p> <p>예) 솔루션 개발업체의 프로그래머가 조달청에 와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산업분류는 ?</p> <p>☞ 솔루션 개발업체인 소속 사업체의 산업활동 내용에 따라 72(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으로 분류</p> <p>☞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지난주에 일한 사업체’를 파악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산업 내용에 따라 76으로 분류</p>
<p>Q2 교차로, 벚룩시장 등 종합 생활정보지를 발간하는 사업체의 산업은?</p>	<p>A2 종합생활정보지는 개인 및 업체의 광고물을 수수료를 받고 게재해 주는 산업활동</p> <p>- 광고물을 수주후 타 인쇄업체에서 인쇄 후 배포하는 형태나 해당업체에서 직접 인쇄 후 배포하는 형태 모두 22(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제조업)로 분류</p>
<p>Q3 백화점내 음식점, 상록회관내 수영장, 호텔내 오락실 등의 산업은?</p>	<p>A3 백화점, 상록회관, 호텔소속이라 할지라도 음식점, 수영장, 오락실 등이 별도의 계정이 있으면 별도의 사업체로 분류하며 계정이 없는 경우 전체 소속으로 분류</p> <p>예) 상록회관처럼 회관 전체를 관리하는 경우 회관내의 매장이라 해도 상록회관의 주된 활동인 66(보험 및 연금업)으로 분류</p>

사 례	해 설
Q4 판매와 행상의 직업분류구분은?	<p>A4 하는 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럭으로 다니면서 생선, 야채, 과일 등을 판매하는 경우처럼 고정된 장소 없이 돌아다니면서 판매활동을 하는 경우 521(매장 판매종사자) - 사업체나 음식업체를 돌아다니며 판매활동을 하는 경우와 같이 고정된 장소가 없다 할지라도 599(기타 판매 종사자)
Q5 구몬수학, 재능영어, 눈높이수학, 곰돌이 등 학습용 교재를 판매하는 사람의 직업분류는?	<p>A5 하는 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적으로 가구를 방문해 아동에게 학습지의 내용을 가르치고 판매하는 경우는 253(직업훈련 및 학원강사) - 사무실에서 학습용 교재 등에 대한 문의가 있을 때 이에 대한 내용 설명만 해주는 선전원은 599(기타 판매종사자) - 각종 학습지를 가구에 배달만 하는 경우 912(운송관련 단순직 종사자)
Q6 할인점 임대매장에서 빵, 호떡, 김밥 등을 만들어서 파는 경우(시식은 매장밖에서만 가능) 산업, 직업은?	<p>A6 산업은 개인에게 임대된 곳이므로 55(음식점업)로 분류, 직업은 441(조리사)</p> <p>※ 할인점에서 직영하는 곳이라면 산업은 할인점의 산업활동에 따라 52(소매업)으로 분류</p>
Q7 신규취업자가 연수중일 때 산업, 직업분류는?	<p>A7 산업은 취업한 사업체의 산업으로 분류하나, 그룹으로 입사 소속 사업체가 결정되지 않으면 모기업 산업으로 분류, 직업은 연수 후 담당하게 될 업무내용을 질문하여 분류하며, 담당 업무가 연수후 결정되는 사항으로 알 수 없을 때는 직업 311(경영관련 사무원)</p>

사	해
례	설
<p>Q8 도라지, 마늘 등 식품류의 껍질을 벗기는 일을 하는 사람의 산업, 직업은?</p>	<p>A8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소매활동으로 보아 산업 52(소매업), 직업 599(기타 판매종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점도매업체에 판매하면 산업 51(도매 및 상품중개업), 직업 521(매장 판매 종사자) - 사업체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껍질을 벗기는 단순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은 해당업체가 속한 산업분류와 동일, 직업은 931(청소 및 방역원, 청소 및 세탁종사자 : 음식점으로 다시 보냄) 또는 921(생산관련 단순직 종사자 : 식료품 제조업체에 다시 보냄)
<p>Q9 고물상의 산업, 직업은?</p>	<p>A9 고물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수집하는 사람의 경우는 산업 51(도매 및 상품중개업), 직업 931(청소 및 방역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집된 고물을 사서 재활용품업체에 판매하는 고물상폐품수거업체는 산업 51(도매 및 상품중개업), 직업 521(매장 판매 종사자)
<p>Q10 만화채색하는 사람의 직업은?</p>	<p>A10 책도안, 도자기 그림그리기, 의상실 의류도안, 디자인 된 모양에 색칠하는 경우는 디자이너로 불린다 할지라도 284(창작 및 공연예술가)에 분류</p>
<p>Q11 놀이방 및 어린이집의 산업구분은?</p>	<p>A11 순수하게 탁아만 하는 경우 산업 86(사회 복지사업), 교육과 탁아를 함께 하는 경우 산업은 80(교육 서비스업)</p>
<p>Q12 컴퓨터를 이용한 사진 인쇄(스티커 사진)의 산업은?</p>	<p>A12 산업 74(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p>

4. 종사상 지위 분류 사례

사	례	해	설
Q1	가내작업의 종사상의 지위 분류 기준은?	A1	<p>자기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작업의 대가를 이윤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재료를 가내작업자 본인이 구입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자영자로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장비 없이 하는 경우로서 재료를 본인이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자영자로 조사 - 재료를 타사업체에서 공급받아 간단한 마무리작업 등을 해주고 일한 양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경우에는 일용으로 조사
Q2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로 학생과외지도를 하는 경우 종사상 지위는?	A2	입주한 경우에만 임시, 나머지는 자영자
Q3	개인택시 기사가 처와 같이 일일 교대로 운전하는 경우 처의 종사상 지위는?	A3	처의 수입으로 구분하는 것 없이 남편의 수입으로 일괄 처리되면 처의 종사상 지위는 무급가족종사자
Q4	평상시에는 집에서 가사를 돌보나 여행사에서 필요시 부르면 통역을 해주는 사람의 종사상지위는?	A4	본인의 사무실이 있는 경우에는 자영자로 보며, 집에서 연락을 기다리는 경우는 일용으로 구분
Q5	전기안전협회 소속으로 되어 있으나 여기서 월급을 받지 않고 각 회사에서 전기안전유무 검사를 요청받으면 검사를 해주고 그 곳에서 대금을 받는 사람의 산업, 직업, 종사상지위는?	A5	전기안전협회 소속이나 안전검사를 해주고 해당회사에서 대금을 받으므로 산업 74(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직업 237(안전관리 및 검사원), 종사상 지위는 자영자로 분류

사 례	해 설
<p>Q6 보험모집인, 우유·화장품 등 외판원의 종사상지위 구분?</p>	<p>A6 아래와 같이 분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모집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기간의 교육이수 후(세무서 등록코드 부 여) 회사 소속의 모집인으로서 보험협회에 정식가입되면 실적에 따른 실적급이 기본급 과 더불어 지급되는 경우 ⇒ 회사에 소속되어야 활동이 가능, 임금근 로자로 분류 · 보험대리점이나 영업소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부여 받아 독립된 점포를 소유한 경우 ⇒ 자영자로 분류 - 우유·화장품 등 외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 자본을 가지고 물건을 구입해 판매 ⇒ 자영자 · 물건을 판매하여 실적급 형식의 수당을 받는 경우 ⇒ 그 대리점이나 회사소속의 임금근로 자(임시)로 분류

V. 내검요령 및 자료처리 일정

1. 조사표 내검요령

가. 유의사항

- 조사대상가구, 조사대상 가구원이 조사에서 누락 또는 중복되었는지 확인
 - ☞ 가구관리사항, 가구관리명부, 조사구요도 활용
- 조사항목의 누락·착오사항 점검방법

	내용검토시 중점 유의사항
개별항목 내용검토	- 기입되어야 할 조사사항 누락 여부 - 건너 띄워야 할 항목의 조사 여부 - 단일 선택인데 복수응답 여부 - 실수로 착오기입(오기) 여부 - 지정된 부호 이외의 부호를 기입하였는지
여러 항목간 연관성 종합심사 (Cross Check)	- 조사항목간 <u>상관관계가 논리적으로 잘 부합되는지</u> 여부 예) 가구주와의 관계(조사표 2번 항목)가 ‘배우자’ 로 조사된 사람이 혼인상태(6번 항목)에서는 ‘미혼’ 으로 기재 예) 교육정도(5번 항목)에서 고등학교 재학으로 조사된 자의 생년월일(4번 항목)에서 계산된 나이가 30세이상

나. 내검요령

○ 관리사항부문

- 가구구분관련: 가구구분이 농가이며 가구주인 경우
농가는 가구주의 생업(또는 주된 업)이 산업분류 01 및 02, 직업
분류는 612(농업 종사자)·621(임업 종사자), 951(농림어업관련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되므로 이를 확인
- ※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자급농가가 나올 수 없음에 주의

○ 확인항목

- 생년월일과 혼인상태관련 : 나이는 어린데, 혼인상태가 2(유배우),
3(사별), 4(이혼)인 경우
- 생년월일과 활동상태 관련: 연령이 30세 이상인 자가 통학에 기입된 경우
 - ☞ 통학만을 하는지 틈틈이 일을 하면서 통학을 하는 지를 재확인
 - ☞ 가구주가 남자인 경우에는 가구주 여부를 재확인
- 활동상태관련 : 무급가족종사자가 일시휴직으로 조사된 경우
 - ☞ 무급가족종사자는 일시휴직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오류를 확인

○ 실업자항목

- 구직기간관련

: 구직활동기간이 6개월 이상인자

☞ 다시 한번 계속적으로 구직활동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

예2) 전월에 5개월(구직기간)로 조사되었으나, 전월말에 취업하였
다가 금월에 다시 실업자로 조사된 경우에는 1개월로 조사
되어야 함

○ 기타항목

- 종사상지위관련 : 가구주가 무급가족종사자인 경우
: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사례이므로 다른 가구원의 종사상 지위 확인
예) 동일가구내 아버지(유치원 버스 운전기사)와 딸
(유치원 운영)의 경우
⇒ 딸은 자영자, 아버지는 무급가족종사자로 분류
- 종사자규모와 종사상지위관련 : 종사상지위가 자영자 및 무급가족종사자인데 종사자 규모가 5인 이상으로 기입된 경우
: 종사자 규모 항목에서 『2. 5~9인』 이상인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재확인 필요
예외) 자영자로 몇 명이 동업하는 경우는 가능함
- 종사자규모와 종사상지위관련 : 종사자 규모가 4, 5, 6, 7이면서 종사상 고용주인 경우지위가
: 법인기업체의 대표는 임금근로자이므로 종사자규모 또는 종사상지위의 착오확인

2. 자료처리 일정

- 각 지방청·사무(출장)소에서 입력자료 점검 : 매월 초
- 전월대비 증감사유 등 보고 : 매월 초순경
 - ☞ 경제활동인구 및 산업별 동향 등 파악하여 전월대비 증감내역 송부
- 조사표 제출 : 지방청·사무소(출장소분 포함)에서 자체 보관
- 결과분석·보고 및 결과 공표 : 매월 중순경

부 록

I. 한국표준 산업분류

II. 한국표준 직업분류

III. 경제활동인구조사 흐름도

I. 한국표준산업분류

A 농업 및 임업(01~02)

01 농업 및 축산업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조경수 식재 및 농업관련 서비스업,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02 임업 임업

B 어업(05)

05 어업 어로어업, 양식 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

C 광업(10~12)

10 석탄, 원유 및 우라늄 광업

석탄 광업,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 및 관련 서비스업, 우라늄 및 토륨 광업

11 금속공업

철 광업, 비철금속 광업

12 비금속 광물 광업(연료용 제외)

토사석 광업,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D 제조업(15~37)

15 음·식음료 제조업

고기, 과일, 채소 및 유지 가공업, 곡물 가공품, 전분 및 사료 제조업, 기타 식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16 담배제조업 담배 제조업

17 섬유제품 제조업(봉제 의복 제외)

제사 및 방직업, 직물 제조업, 편조업, 섬유 염색 및 가공업,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18 봉제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봉제의복 제조업,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19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가죽 제조업, 가방, 핸드백 및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신발 제조업

2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제재 및 목재 가공업, 나무,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골판지, 종이용기 및 기타 종이제품 제조업

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출판업, 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 기록매체 복제업

23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코크스 및 관련 제품 제조업, 석유정제품 제조업, 핵연료 가공업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기초 화합물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 기타 화합물 제조업, 화학섬유 제조업

25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고무제품 제조업, 플라스틱 제조업

26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7 제1차 금속산업

제1차 철강산업, 제1차 비철금속산업, 금속 주조업

28 조립 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기타 조립금속 제품 제조 및 금속 처리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일반 목적용 및 기계 제조업,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기타 가정용 기구 제조업

- 30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업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 3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전기공급 및 전기 제어장치 제조업,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축전지 및 일차전지 제조업, 전구 및 램프 제조업,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 32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제조업,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제조업
- 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의료용 기기 제조업, 측정, 시험, 항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안경, 사진기 및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
-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 3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철도장비 제조업,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그 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36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 37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재생용 금속가공원료 생산업, 재생용 비금속 가공원료 생산업

E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40~41)

- 40 전기, 가스 및 증기업
전기업, 가스제조 및 배관 공급업, 증기 및 온수 공급업
- 41 수도사업
수도사업

F 건설업(45~46)

45 종합건설업 토목건설업, 건물 건설업

46 전문직별 공사업

토목시설물 및 건축 축조관련 전문 공사업,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전기 및 통신 공사업, 건축 마무리 공사업, 건설장비 운영업

G 도매 및 소매업(50~52)

50 자동차 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부품 및 부속품 판매업, 이륜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차량용 연료 소매업

51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상품 중개업, 산업용 농축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가정용품 도매업, 건축자재 및 철물도매업, 금속광물 및 1차 금속제품 도매업, 기타 산업용 중간재 및 재생재료 도매업,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 도매업

52 소매업(자동차 제외)

종합 소매업,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의약품, 의료용 기구 및 화장품 소매업,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가전제품, 가구 및 가정용품 소매업,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중고품 소매업, 무점포 소매업

H 숙박 및 음식점업(55)

55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업, 음식점업

I 운수업(60~63)

60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철도 운송업, 육상여객 운송업, 도로 화물 운송업, 파이프라인 운송업

- 61 수상운송업 해상 운송업, 내륙 수상 운송업
- 62 항공운송업 정기항공 운송업, 부정기 항공 운송업
- 63 여행 알선, 참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화물 취급업, 창고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J 통신업(64)

- 64 통신업 우편 및 소포 송달업, 전기 통신업

K 금융 및 보험업(65~67)

- 65 금융업 통화 금융기관, 비 통화 금융기관
- 66 보험 및 연금업 보험 및 연금업
- 67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금융관련 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L 부동산 및 임대업(70~71)

- 70 부동산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 71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운송장비 임대업,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M 사업 서비스업(72~75)

- 7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컴퓨터 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자료처리 및 컴퓨터 시설 관리업
- 73 연구 및 개발업 자연과학 연구 개발업,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 개발업,
자연과학 연구 개발업,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 개발업

7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법무 및 회계 관련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경영 상담업,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기타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광고 대행업, 전문 디자인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5 사업지원서비스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및 고용서비스업,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N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76)

7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76)

입법 및 일반 정부 행정, 사회 및 산업정책 행정, 외무 및 국방 행정, 사법 및 공공질서 행정, 사회보장 행정

O 교육 서비스업(80)

80 교육 서비스업

초등 교육기관, 중등 교육기관, 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 및 외국인 학교, 기타 교육기관

P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85-86)

85 보건업 의료업, 수의업

86 사회복지사업 수용 복지시설, 비수용 복지시설

Q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87-88)

87 영화, 방송 및 공연 산업 영화산업, 방송업, 공연산업

88 기타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뉴스 제공업, 도서관, 기록보존소, 박물관 및 기타 문화관련 산업, 경기 및 오락 스포츠 업, 기타 오락 관련 산업

R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90~93)

90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하수, 분뇨 및 축산폐기물 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공공장소 청소 및 유사 서비스업

91 회원 단체

산업 및 전문가 단체, 노동조합, 기타 회원 단체

92 수리업

기계장치 수리업, 자동차 및 이륜 자동차 수리업,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93 기타 서비스업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그외 기타 서비스업

S 가사 서비스업(95)

95 가사 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T 국제 및 외국 기관(99)

99 국제 및 외국 기관

국제 및 외국 기관

U 무직

II. 한국표준직업분류

1	관리자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3	사무종사자	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4	서비스 종사자	9	단순 노무 종사자
5	판매 종사자	A	군 인

11 공공 및 기업고위직

111 의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공공단체 임원

의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공공단체 임원

112 기업 고위임원 기업 고위임원

12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

121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

정부 행정 관리자, 금융 및 보험 관리자, 경영지원 관리자, 기타 사업서비스 관리자(부동산임대업 관리자, 인력공급·알선 서비스 관리자)

13 운영 및 생산관리직

131 연구·교육 및 법률 관련 관리자

인문·사회·자연 및 공학 연구 관리자, 교육 관리자, 법률·경찰·소방 및 교도 관리자

132 보건 및 사회복지 관련 관리자

보건의료관련 관리자, 사회복지관련 관리자

133 문화·예술·디자인 및 방송 관리자 문화예술디자인 및 방송관련 관리자

134 판매·운송 및 서비스 관련 관리자

영업 및 판매관련 관리자, 운송관련 관리자, 미용·숙박·여행·오락 및 스포츠 관련 관리자, 음식서비스 관련 관리자, 환경·경비 및 청소관련 관리자

135 건설·정보통신 및 생산관련 관리자

건설 및 광업관련 관리자, 전기·가스 및 수도관련 관리자, 정보통신 관련 관리자, 생산관련 관리자

139 농림어업 및 기타 관리자

농림어업 및 기타 관리자

21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211 생명 및 자연과학관련 전문가

생명과학 연구원(생물학, 의학, 약학, 농학, 임학, 수산학, 식품학, 축산, 수의학), 자연과학 연구원(물리학, 화학, 천문 및 기상학, 수학 및 통계학, 환경 및 해양과학)

212 인문 및 사회과학 전문가

인문과학 연구원(철학, 역사학, 언어학, 문학, 인류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과학 연구원(정치학, 경제학, 경영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언론학)

211 생명 및 자연과학관련 시험원

생명과학 시험원(생물학, 의료과학), 자연과학 시험원(통계자료 처리원,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화학, 지질학), 농림어업관련 시험원

22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221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전문가

컴퓨터 하드웨어 공학 기술자, 통신공학 기술자

22 정보시스템 전문가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자, 데이터 베이스 관리자, 네트워크시스템 개발자, 컴퓨터 보안 전문가, 웹 및 멀티미디어 기획자, 웹 개발자

223 정보 시스템 운영자 정보 시스템 운영자

224 통신 및 방송장비 기사 통신 및 방송장비 기사

23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231 건축 및 토목공학 전문가

건축가 및 건축공학 기술자, 토목공학 기술자, 조경 기술자, 도시 및 교통 설계 전문가, 측량 및 지리정보 전문가

232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33 금속 및 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금속 및 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34 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35 전자·전기 및 기계공학 전문가

전자공학 기술자, 전기공학 기술자, 기계공학 기술자

236 캐드원 및 건설 기술 종사자 캐드원, 건설자재 시험원, 건설 견적원

237 안전관리 및 검사원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 비파괴 및 도장 검사원, 환경 및 보건위생 검사원

238 비행기·선박·철도 기관사 및 관제사

비행기 조종사, 선장·항해사 및 도선사, 철도 및 전동차 기관사, 관제사

239 기타 공학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식품·섬유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에너지 및 기타 공학기술자

24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241 의료진료 전문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242 약사 약사 및 한약사

243 간호사 간호사(보건교사, 조산사포함)

244 치료사 물리치료사, 심리 및 기타 의료 치료사(언어, 음악 치료사 등)

245 의료기사 및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영양사, 위생사, 안경사, 의
무기록사

246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및 취업 알선원, 상담 전문가 및 청소년 지도사,
시민 단체 활동가, 보육교사, 생활지도원 및 기타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

247 종교관련 종사자

성직자(목사, 신부, 승려, 교무), 기타 종교관련 종사자(수녀, 전도사)

25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251 대학 교수 및 강사

대학 교수, 대학 시간강사

252 학교 교사

중고등학교 교사, 초등학교 교사, 유치원 교사, 특수학교 교사

253 직업훈련 및 학원 강사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컴퓨터 강사, 기술 및 기능계 강사, 문리 및 어학계
강사, 예능계 강사, 학습지 및 방문교사

259 기타 교육 전문가

장학관연구관 및 교육 관련 전문가, 대학 조교, 초·중·고등학교 보조교사

26 경영전문가 및 관련직

261 인사 및 경영전문가

인사 및 노사관련 전문가,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경영지도 및 진단 전문가

262 금융 및 보험 전문가

투자 및 신용분석가, 자산 운용가, 보험계리인, 증권 및 투자 중개인, 손해
사정인, 기타 금융 및 보험 관련 전문가

263 상품기획 및 홍보 전문가

상품기획 및 여론조사 전문가, 여행상품 개발원, 광고 및 홍보 전문가, 행사 기획자

264 감정사 및 상품부동산 중개관련 종사자

감정평가 전문가, 상품 중개인, 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인

27 법률 및 행정 전문직

271 법률 전문가

판사 및 검사,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272 행정 전문가

기획 및 집행 행정 전문가

28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련 전문직

281 작가기자 및 출판 전문가

작가 및 관련 전문가, 번역가, 통역가, 기자 및 논설위원, 출판물 전문가

282 큐레이터·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큐레이터 및 문화재 보존원, 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283 연극·영화 및 방송 전문직

감독 및 연출가, 연기자 및 모델, 아나운서 및 리포터, 연극영화 및 방송 기술감독, 촬영기사, 음향 및 녹음기사, 영상·녹화 및 편집기사, 조명기사, 기타 연극영화 및 방송 관련 기술 종사자

284 창작 및 공연예술가

화가 및 조각가, 지휘자·작곡가 및 연주가, 가수 및 성악가, 무용가 및 안무가, 사진기자 및 사진가, 국악 및 전통예능인, 만화가 및 애니메이터

285 디자이너

제품 디자이너, 패션 디자이너, 인테리어 디자이너, 시각 디자이너, 웹 및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286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관련 종사자

경기감독 및 코치, 운동선수, 경기심판 및 기록원, 레크레이션 강사, 기타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관련 종사자(바둑기사, 프로게이머, 스포츠 매니저)

289 연예인 매니저 및 기타 문화예술 관련직

연예인 매니저, 동물조련사 및 기타 문화예술관련 종사자(엑스트라, 마술사)

31 경영 및 회계관련 사무직

311 경영관련 사무원

인사 및 교육훈련 사무원, 관세 및 무역 사무원, 구매 및 자재 사무원, 생산 관리 및 품질 관리원, 운송 및 선적 사무원, 마케팅 및 기획 사무원, 국가행정·지방행정 및 기타 공공행정 사무원, 총무 사무원

312 회계 및 경리 사무원 회계사무원, 경리사무원

313 비서 및 사무 보조원 비서, 사무보조원

32 금융 및 보험 사무직

321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직 종사자

출납창구 사무원, 보험 사무원, 금융 사무원, 신용관련 추심원

33 감사 및 법률 사무직

331 감사 및 법률사무 종사자 감사 사무원, 법률 관련 사무원

39 통계조사여행 및 기타 사무직

391 통계조사 사무원 통계조사 사무원

392 여행 사무원

여행사무원, 요금정산원, 예약접수사무원, 기타 사무원(출판 및 자료편집)

41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411 경찰·소방 및 교도 관련 종사자

경찰관, 소방관, 소년보호관 및 교도관

412 경호 및 보안관련 종사자

경호원, 청원경찰, 무인경비시스템 종사자, 창고관리원, 기타 경비관련 종사자
(유통 및 매장 감시원, 주차 단속원)

42 개인 서비스직

421 의료관련 서비스 종사자

구급요원, 간호 조무사, 간병인, 기타 의료서비스 종사자(산후조리 종사원, 치료사 보조원, 수의사 보조원, 간호보조원)

422 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

이용사, 미용사, 피부미용 및 체형관리사, 메이크업 아티스트 및 분장사, 애완 동물 미용사, 기타 미용 서비스 종사자(패션 코디네이터, 이미지 컨설턴트)

423 결혼 및 장례관련 서비스 종사자 결혼상담원, 혼례 및 장례 종사원

429 기타 개인서비스 종사자

안내전화교환원, 고객 상담 및 모니터 요원, 민속신앙 종사자

43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431 운송 서비스 종사자 비행기 승무원, 선박 및 열차 승무원

432 여가서비스 종사자

여행 안내원, 숙박시설 서비스원, 놀이시설 종사원, 노래방·PC방 관련 종사원, 기타 여가관련 종사원(카지노 딜러, 골프장 캐디, 리프트 및 케이블카 조작용, 응원단원)

44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441 조리사

한식 조리사, 중식 조리사, 양식 조리사, 일식 조리사, 차류 조리사, 분식 및 기타 조리사

442 음식서비스 종사자

바텐더, 웨이터, 기타 음식서비스 종사자(푸드 코디네이터)

51 영업직

511 기술 및 일반 영업원

기술 영업원, 무역 영업원, 보험설계사, 자동차 영업원, 일반 영업원

52 매장판매직

521 매장 판매 종사자

의류 판매원, 화장품 판매원, 상점 판매원, 상품 대여원, 매장 계산원

59 기타 판매직

599 기타 판매 종사자

방문 판매원, 노점 및 이동판매원, 통신 판매원, 홍보 도우미 및 판촉원, 매표원(복권, 마권, 항공권, 승차권, 입장권)

61 농·축산 숙련직

611 원예 및 조경 종사자 원예작물 재배자(육묘, 화훼), 조경원

612 농업 종사자

곡식작물 재배 종사자, 채소 및 특용작물 재배 종사자, 과수작물 재배 종사자

613 사육관련 종사자 우유 생산 종사자, 가축양봉 및 양잠 종사자

62 임업 숙련직

621 임업관련 종사자

조림·영림 및 벌목원, 임산물 채취 및 기타 임업 관련 종사자

63 어업 숙련직

631 어업관련 종사자 양식원, 어부 및 해녀

71 식품가공관련 기능직

711 식품가공관련 기능 종사자

제빵원, 떡제조원, 정육원 및 도축원, 식품 검사원, 김치 및 밑반찬 제조 종사원, 기타 식품가공 종사자(건강원, 탕제조원, 수제식품 제조)

72 섬유·의복 및 가죽 관련 기능직

721 섬유·의복 및 가죽 관련 종사자

재봉원, 재단원, 한복사, 양장양복사, 의복수선원, 패턴사, 섬유등급 및 의복제품 검사원, 제화원, 기타 섬유가공 및 가죽 제품 관련 종사자(모자, 카펫, 시트, 가발, 차량시트)

73 가구·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직

731 가구·악기 및 간판 관련 종사자

목재·펠프종이관련 등급원 및 검사원, 가구조립 및 검사원, 가구제조 및 수리원, 악기제조 및 조율사, 간판 제작원

74 주형·용접 및 공예관련 기능직

741 주형원 및 단조원

주형원, 단조원, 용접원, 공예원, 귀금속 및 보석 세공원

75 운송 및 기계관련 기능직

751 자동차 정비원 자동차 정비원

752 운송장비 정비원

비행기 정비원, 선박 정비원, 철도기관차 및 전동차 정비원, 기타 운송장비 정비원(지게차, 오토바이, 자전거)

753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공업기계 설치 및 정비원, 엘리베이터 설치 및 정비원, 냉동냉장·공조기 설치 및 정비원, 보일러 설치 및 수리원, 건설 및 광업기계 정비원, 농업용 및 기타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76 전기 및 전자관련 기능직

761 전기 및 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컴퓨터·사무기기 설치 및 수리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기타 전기·전자 장비 설치 및 수리원

762 전기공

산업전공(비행기, 선박, 철도차량, 플랜트), 내선전공(건물시설, 전기설치, 비상발전기, 조명기구, 전기제어장치, 전기기기), 외선전공(송배전, 지중 전력설비, 전기케이블, 철도 전철)

77 건설 및 채굴관련 기능직

771 건설구조 관련 종사자

철근원, 새시원, 강구조물 건립원, 경량철골원, 콘크리트원, 건축 석공, 조적원, 건축 목공, 기타 건설 구조 관련공

772 건축 마감 관련 종사자

미장원, 방수원, 건축가스 배관원, 단열원, 바닥재 시공원, 유리 부착원, 도배원, 도장원, 기타 건축 마감 관련 종사자(건물 보수 및 해체원)

773 채굴 및 토목 관련직

광원·채석원 및 식재 가공원, 철로 설치 및 보수원, 기타 채굴 및 토목 관련 종사자

78 방송 및 통신장비 관련 기능직

781 방송 및 통신 장비 관련 설치 수리원

방송장비·통신설비·통신케이블 설치 및 수리원

79 기타 제조관련 기능직

799 공업용 배관원 및 기타 제조관련 종사자

공업용 배관원 및 기타 제조관련 종사자(선박, 전기)

81 식품 가공관련 조작직

811 식품가공관련 조작원

제분 및 도정관련 조작원, 곡물가공제품 제조원, 육어류 가공 및 낙농제품 제조관련 조작원, 과일·채소 및 설탕가공 관련 조작원, 음료 제조 관련 조작원, 기타 식품가공관련 조작원(유지제조기, 조미식품, 담배, 건강식품)

82 섬유 및 의복관련 조직직

821 섬유 제조관련 조직원

섬유 제조관련 조직원(연조기, 조방기, 정방기, 권사기, 섬유혼합기, 소면기, 랩핑기)

822 섬유가공관련 조직원

직조기 및 편직기 조직원, 표백·염색관련 조직원, 신발제조 및 관련 기계 조직원, 가죽모피 및 기타 섬유 가공관련 종사원

823 세탁관련 조직원 드라이클리닝 및 세탁원

83 화학 관련 조직직

831 화학물·플라스틱 및 고무제조관련 종사자

석유 및 천연가스 제조 관련 제어장치 조직원, 고무제품 제조관련 조직원, 플라스틱 제조관련 조직원, 화학제품 제조관련 조직원,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조립원, 화학물·플라스틱·고무 제조 관련 검사원, 방사성 물질 및 기타 화학제품 관련 조직원

84 금속·유리·점토 및 시멘트 관련 조직직

841 금속 제조관련 조직원

금속가공관련 제어장치 조직원, 금속 가공관련 조직원

842 판금 관련직 판금원(다트원, 판금원), 제관원

843 주조원 주조원(주조기 운전원)

844 도장 및 도금원 도장기 조직원, 도금·금속분무 및 관련 조직원

845 비금속제조 관련 조직원

유리제조 및 가공관련 조직원, 점토제품 제조관련 조직원, 시멘트·광물제품 제조 및 제어장치 관련 조직원, 석제품 제조관련 조직원, 기타 비금속제품 가공 및 제조관련 조직원(유약, 광택제)

85 기계제조 및 냉·난방 관련 조직직

- 851 금형·공구제조 및 공작기계 조직원 금형원, 공구제조원, 공작기계 조직원
- 852 자동조립라인 및 산업용로봇 조직원 자동조립라인 및 산업용 로봇 조직원
- 853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
자동차조립 및 검사원, 자동차 금속부품 조립 및 검사원, 운송장비 조립 및 검사원, 일반 기계조립 및 검사원
- 854 냉·난방 관련 설비 조직원 냉·난방관련 설비 조직원

86 전기·전자관련 조직직

- 861 발전장치 조직원 발전장치 조직원
- 862 전기·전자설비 조직원 전기·전자설비 조직원
- 863 전기·전자제품 제조장치 조직원
전기제품 제조장치 조직원, 전자제품 제조장치 조직원
- 864 전기·전자부품, 제품조립 및 검사원 전기·전자부품, 제품조립 및 검사원

87 운전 및 운송 관련직

- 871 철도 관련 종사자 철도 신호원 및 수송원
- 872 자동차 운전원
택시 운전원, 버스 및 승합차 운전원, 소형 트럭 운전원, 대형트럭 및 특수차 운전원, 대리 운전원, 기타 자동차 운전원(자가용, 렌터카, 대리 주차원)
- 873 크레인 및 적재용 차량 운전원 크레인·호이스트·적재용 차량 운전원
- 874 건설 및 운송관련 종사자 건설 및 채굴관련 종사원, 갑판원 및 등대지기

88 환경 관련 조직직

- 881 환경 관련 장치 조직원
상하수 처리 관련 조직원, 재활용 및 소각로 관련 장치 조직원

89 목재·인쇄 및 기타 조작성

891 목재·펄프 및 종이관련 조작성

목재가공 관련 조작성, 펄프·종이제조 관련 조작성, 종이제품 제조 관련 조작성

892 인쇄 및 사진현상 관련 조작성

인쇄기 조작성, 사진인화 및 현상기 조작성

899 기타 제조관련 조작성

기타 제조관련 조작성(공기압축기, 안경테 제조, 주입포장 및 봉합기, 상표 및 라벨부착기)

91 건설·광업 및 운송관련 단순 노무직

911 건설 및 광업 단순직 종사자 건설 및 광업관련 단순 노무자

912 운송관련 단순직 종사자

하역 및 적재관련 단순 노무자, 우편물 집배원, 택배 및 빠른 배달원, 음식 배달원, 기타 배달원(음료, 신문)

92 생산 및 제조관련 단순노무직

921 생산관련 단순직 종사자 수동 포장원, 생산관련 단순 노무자

93 청소 및 경비관련 단순노무직

931 청소 및 방역원

환경미화원, 청소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세척원, 방역원

932 건물 및 경비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건물 및 공사장 경비원

933 계기 검침·수금 및 주차관련 종사자

계기검침원, 수금원, 주차 관리원

94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941 가사 및 육아 도우미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942 음식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주방보조원

943 판매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주유원, 기타 판매관련 단순노무 종사자(매장정리원, 전단지배포 및 벽보원)

95 농림어업관련 단순 노무직

951 농림어업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농림어업관련 단순노무자

99 기타 단순 노무직

999 구두미화 및 기타 단순노무 종사자

구두미화원 및 기타 단순 노무자

A1 군 인

A11 장교 영관급 이상, 위관급

A12 장기 부사관 장기 부사관

경제활동인구 부가 조사

I. 근로형태 관련 부가조사 실시개요

II. 근로형태 관련 질문 사례

III. 근로형태 관련 부가조사 흐름도

IV. 청년층 부가조사 실시개요

V. 청년층 부가조사 흐름도

VI. 고령자 부가조사 실시개요

VII. 고령자 부가조사 흐름도

I.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 관련 부가조사 실시 개요

1. 실시배경

- 임금근로자에 대한 세부분석 및 파견근로, 용역근로, 특수고용형태(독립도급근로), 가정내 근로(재택근로) 등 다양한 근로형태에 대한 실태 및 규모를 파악하여 노동관련 정책 및 연구에 활용

2. 연혁

- 2000. 8. : 부가조사 첫 실시(다양한 근로형태)
- 2001. 8. : 근로형태 및 산업·직업간 인력 이동실태에 관한 부가조사 실시
- 2002. 3. / 2002. 8. : 부가조사 실시(근로형태)
- 2003. 8. 이후 매년 8월마다 근로형태 관련 부가조사 실시

3. 부가조사 개요

- 조사대상 : 약 33,000 표본가구에 상주하는 15세 이상 가구원 중 임금 근로자
- 조사방법 : 「경제활동인구조사표」에 항목을 추가하여 면접조사
- 조사기간
 - 조사 대상기간 : 2006년 조사 8. 13~8. 19(1주간)
 - 조사 실시기간 : 2006년 조사 8. 20~8. 26(1주간)

○ 조사항목 : 19개 항목

설 문 내 용	참 고
41. 계약반복·갱신여부 42. 단기근로여부 43. 계속근로 가능여부 및 계속근로 가능사유 44. 향후기대 근속기간 45. 근속기간 제한이유 46. 근로시간 형태 47. 임금 지급업체 48. 실제 근무 사업체(장) 49. 특수고용형태 근로여부 50. 주로 일한 장소	
<u>51. 지난 주 일자리 취업동기</u>	<u>전체 수정</u>
52. 사회보험 가입여부 53. 퇴직금 등 수혜여부 54.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55. 노동조합 가입여부 56. 임금 형태 57. 3개월간 평균임금	
<u>58. 교육·훈련 경험유무</u>	<u>설문추가</u>
59. 주5일제(주40시간 근로제) 실시여부	

II. 근로형태 관련 질문 사례

Q. 근로계약서가 아닌 채용계약서 양식으로 근로기간을 제외한 근로조건, 임금 등을 작성 경우?

A. 근로계약서가 아니더라도 고용계약서, 채용계약서 이름으로 한두 부분이 제외 되더라도 전반적인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경우 작성한 것으로 봄

Q. 전교조의 경우 합법적인 노동조합인지?

A. 몇 년 전부터 합법화가 되어 노동조합으로 인정이 되고 있음.
명칭자체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임

Q. 임금근로자중 임시직(월급제로 받지만 출근하지 않은 날의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의 임금형태?

A. 매월 동일한 날에 급여를 수령하여도 일당으로 계산된 급여를 받으므로 일급제로 처리

[월평균 임금 산정 예]

* 일용노동자의 경우에 일거리가 없어서 6~7월은 일을 하지 않고 8월에만 일하여 30만원의 수입이 있었을 경우 월평균 임금은

$$\Rightarrow 30\text{만원} \div 3\text{개월} = 10\text{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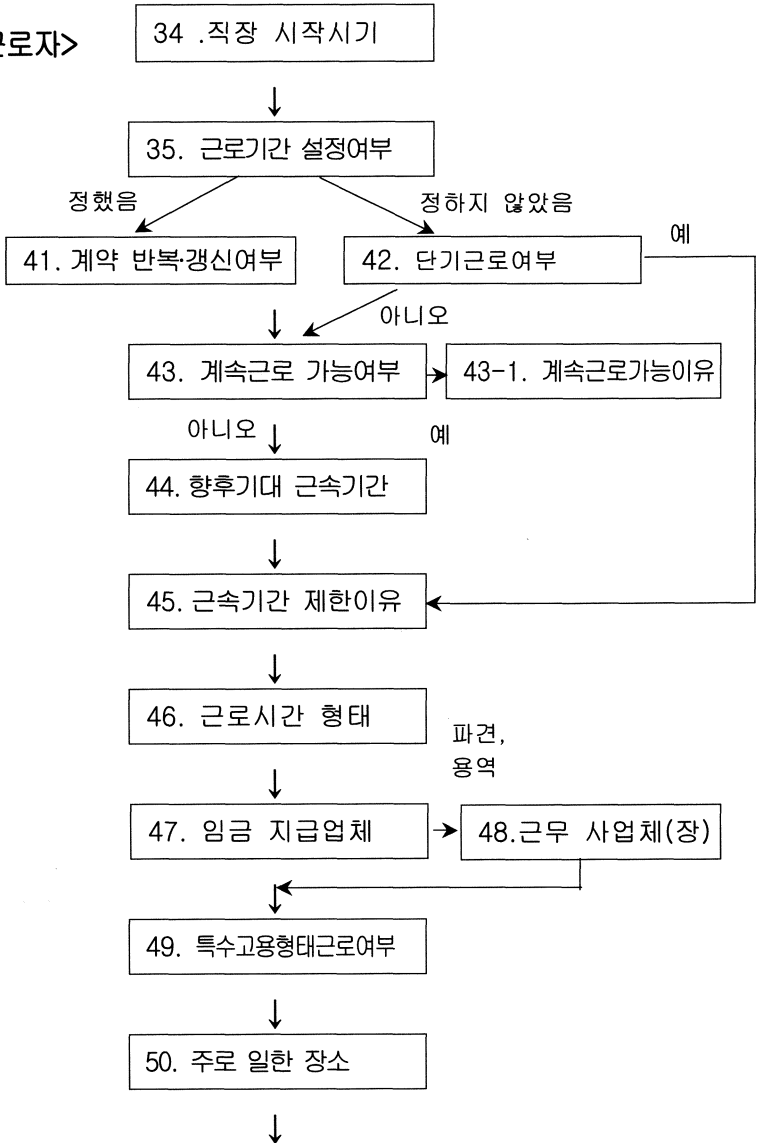
* 일용근로자(일당 또는 매일 품삯으로 받는 사람과 시간급으로 일하여 보수를 받는 사람)는 지난 3개월간의 모든 근로소득을 합쳐서 3개월 평균 근로소득으로 조사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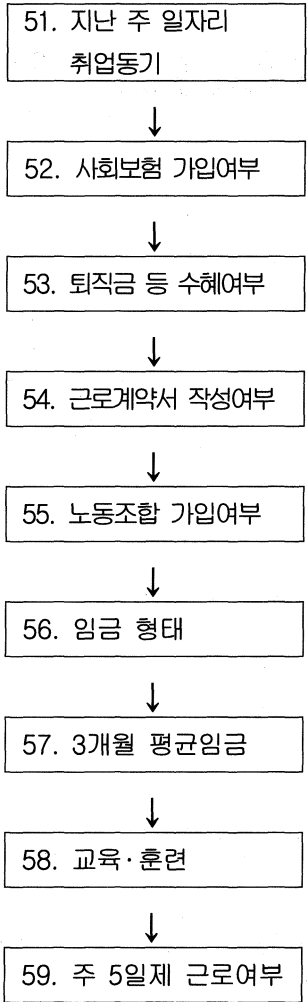
* 단, 학업, 병원입원 등 일을 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로 1개월 또는 2개월만 일한 경우는 일한 달의 평균 근로소득으로 조사해야 함

- Q. 건설일용노동자 월평균임금을 8월 19일에 조사할 경우, 나머지 기간의 작업여부가 불명확할 때 월평균임금은?
- A. 5~7월의 월평균임금을 조사하거나 5.16~8.15(3개월간)의 월평균임금을 조사
- Q. 신규취업이나 전직으로 아직 1개월이 안된 경우의 월평균임금은?
- A. 1개월간 받기로 되어 있는 임금을 기준으로 기입
- Q. 육아휴직 또는 출산휴가로 일시휴직 상태인 사람의 월평균임금은?
- A. 평소 근무시 최근 3개월 동안 일한 직장에서 받은 월평균 임금 또는 보수를 기준으로 기입
- Q. 종업원수가 100인 이상인 경우인데, 주 5일근로제 실시 안한다고 답한 경우?
- A. 만약, 주40시간 근로제를 유지하기 위해 토요일에 출근시, 초과근로수당을 받는 경우는 주5일제 실시로 처리하고, 초과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주5일제 비실시로 처리
- Q. 현재 6개월째 일을 하고 있으며, 최근 3개월 동안 임금이 체불된 상태인 경우 월평균임금은?
- A. 체불된 기간 3개월간 받아야 되는 금액을 조사하여 평균하여 기입

Ⅲ. 근로형태 관련 부가조사 흐름도

<임금근로자>





질문 끝

IV.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 실시 개요

1. 실시배경

- 최근 청년층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의 2배를 상회하는 등 청년층 실업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음

(단위 : %)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3월
전체 실업률	4.4	4.0	3.3	3.6	3.7	3.7	3.9
15~29세 실업률	8.1	7.9	7.0	8.0	8.3	8.0	8.5

- 이들에 대한 고용 및 실업대책 수립을 위해서 실업·취업실태, 학교 교육과 직업의 연계성 등을 심층 파악할 필요

2. 부가조사 연혁

- 청년층(15~29세) 실업자 증가에 따른 취업실태 파악을 위한 부가조사 실시
 - 2002년 6월 첫 조사 실시
 - 2003년 이후로 매년 5월 실시

3. 부가조사 개요

- 조사대상 : 경제활동인구조사 대상 가구원 중 15~29세 연령층

(2006년 조사 : 1976.5.15.~1991.5.14.까지 출생자)

○ 조사기간

- 조사대상 기간 : 2006년 조사 5월 14일 ~ 5월 20일(1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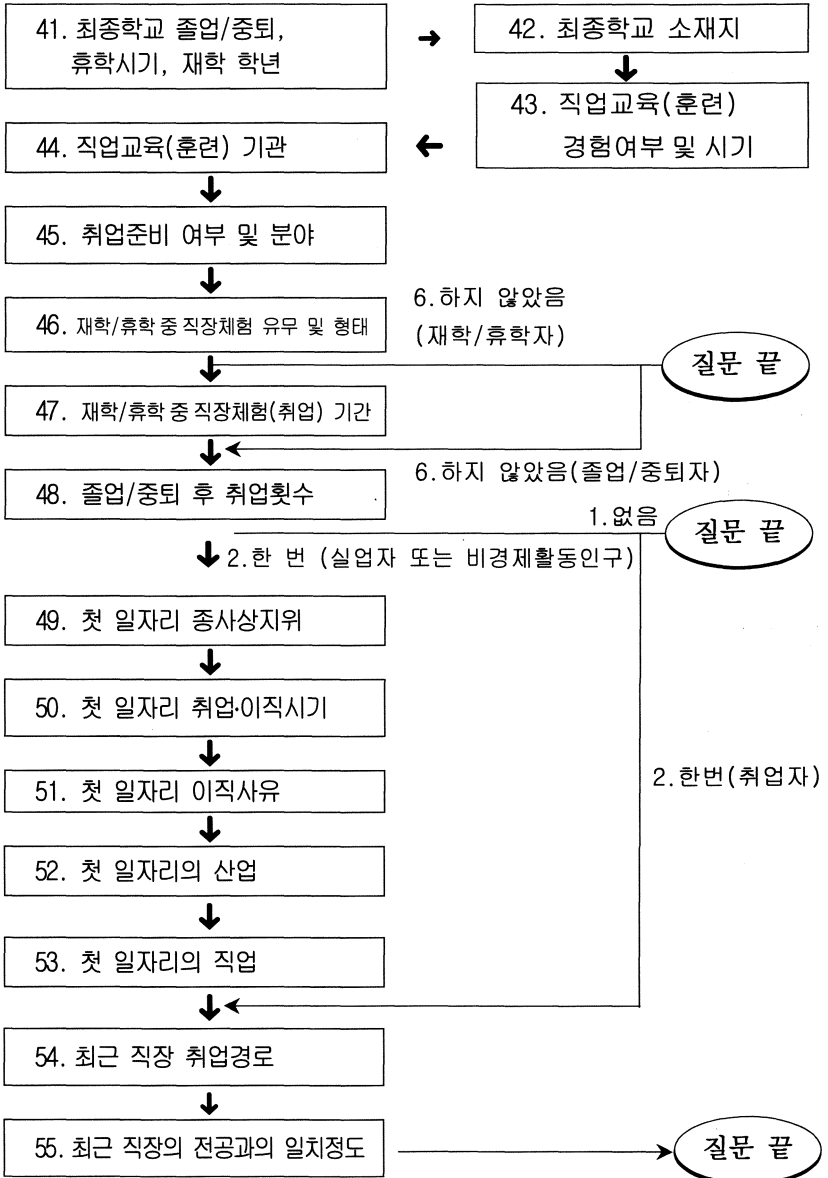
- 조사실시 기간 : 2006년 조사 5월 21일 ~ 5월 27일(1주)

○ 조사항목 : 15개 항목

설 문 내 용

41. 최종학교 졸업시기, 재학년도
42. 최종학교 소재지
43. 학교교육이외 직업교육(훈련) 경험여부 및 시기
44. 직업훈련(교육) 받은 기관
- 45. 취업준비 여부 및 분야**
- 46. 재학/휴학 중 직장체험(취업포함) 유무 및 형태**
- 47. 재학/휴학 중 직장체험(취업포함)기간**
48. 졸업/중퇴 후 취업횟수
49. 첫 직장 종사상지위
50. 첫 직장 취직·이직 시기
51. 첫 직장 이직 사유
- 52. 첫 직장의 산업**
53. 첫 직장의 직업
54. 직장 취업경로
55. 전공과의 일치정도

V. 청년층 부가조사 흐름도



Ⅵ. 경제활동인구 고령자 부가조사 실시개요

1. 실시배경

- 급속한 고령화 사회진입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복지비용 증가로 고령자 노동력 활용이 중요해지고 있음
 - 노인일자리 지원 등 고용안정 정책 및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인취업실태에 관한 통계 필요

2. 부가조사 연혁

- 고령층(55~79세) 인구에 취업실태 파악을 위한 부가조사 실시
 - 2005년 5월 첫 조사 실시

3. 부가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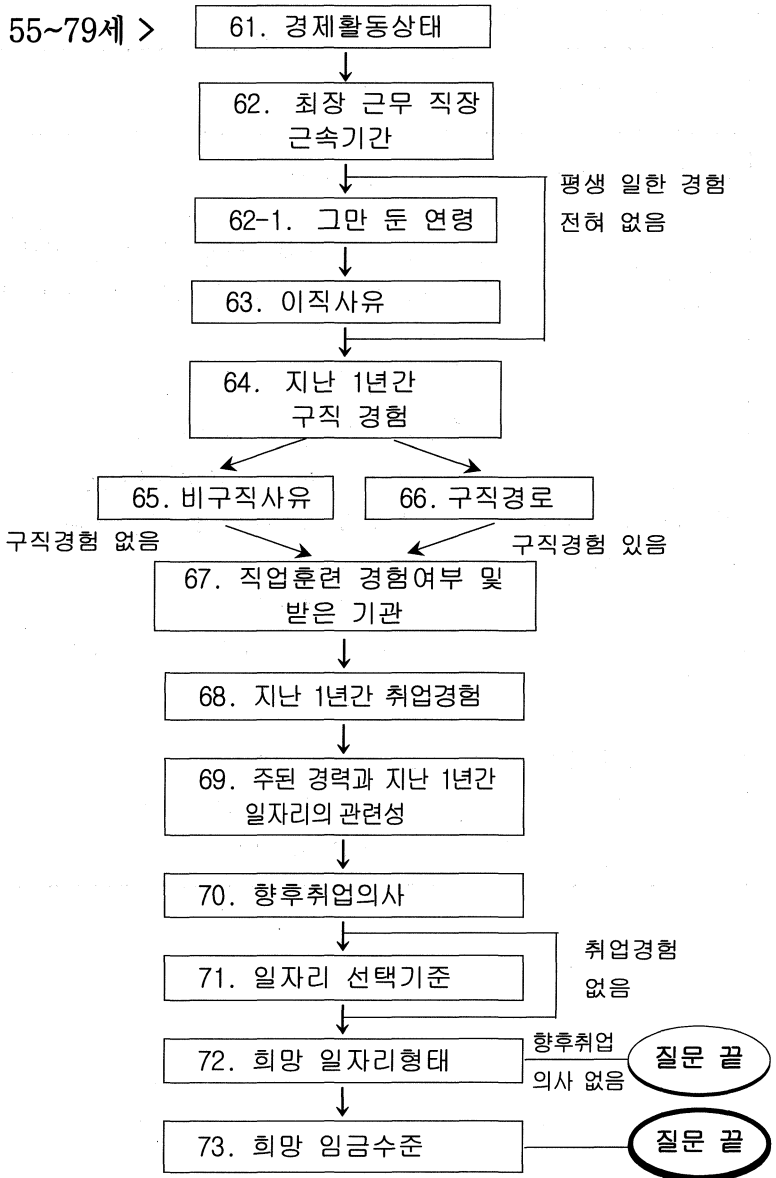
- 조사대상 : 경제활동인구조사 대상 가구원 중 55~79세 연령층
(2006년 조사 : 1926.5.15~1951.5.14 출생자)
- 조사기간
 - 조사대상 기간 : 2006년 조사 5월 14일 ~ 5월 20일(1주)
 - 조사실시 기간 : 2006년 조사 5월 21일 ~ 5월 27일(1주)

○ 조사항목 : 13개 항목

구분(대상)	설 문 내 용
경제활동상태(고령자)	61. 경제활동상태
가장 오래 근무한 직장 (취업유경험자)	62. 가장 오래 근무한 직장 근무기간 62-1 가장 오래 근무한 직장 이직시기 63. 이직사유
지난 1년간, 구직/ 직업훈련/취업경험 (전체 고령자)	64. 구직활동 경험 65. (비구직자) 비구직사유 66. (구직경험자) 주된 구직경로 67. 직업훈련 유무 및 받은 기관 68. 취업경험 69. (취업경험자) 최근 취업 일자리와 생애 주된 경력과 관련성
장래 근로에 대한 희망 (전체 고령자)	70. 향후 취업의사 71. 일자리 선택기준 72. 희망하는 일자리 형태 73. 희망임금수준

VII. 고령자 부가조사 흐름도

< 만 55~79세 >



경제활동인구조사 (가구관리) 입력시스템

1. 시스템 실행하기
2. PDA를 이용한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입력방법
3. PC를 이용한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입력방법
4. PC에서 신규 가구 입력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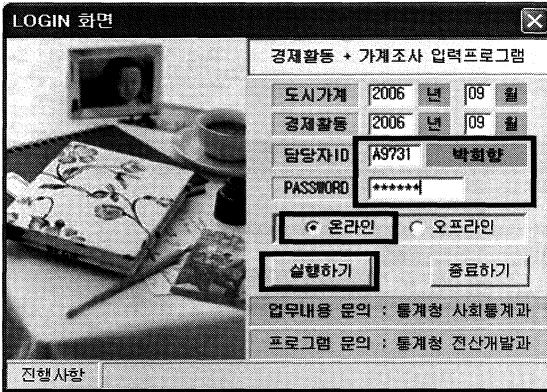
<가구관리통합 프로그램 경제활동인구조사 사용방법>

1. 시스템 실행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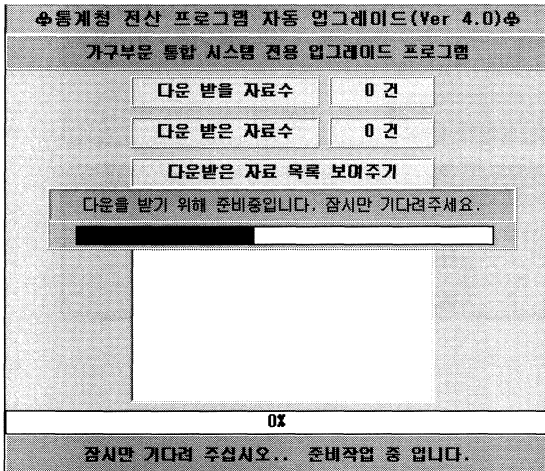


1) 가구관리통합 아이콘을 누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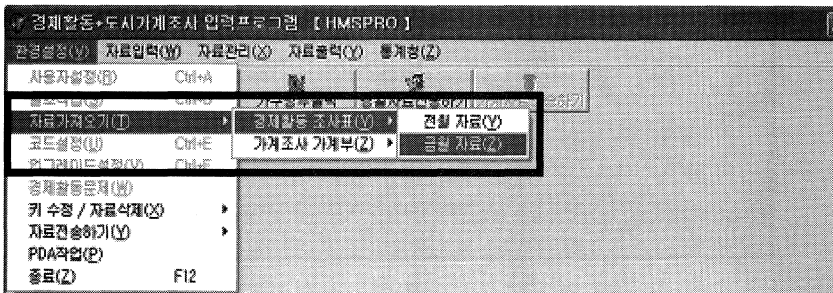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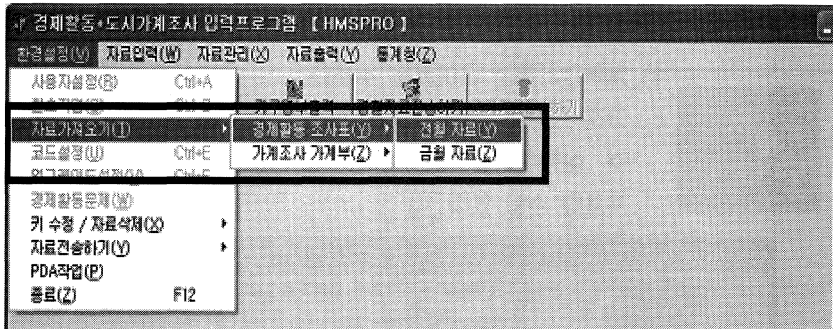
아래 그림과 같이 담당자ID와 PASSWORD를 입력하고 온라인 => 실행하기를 클릭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프라인을 사용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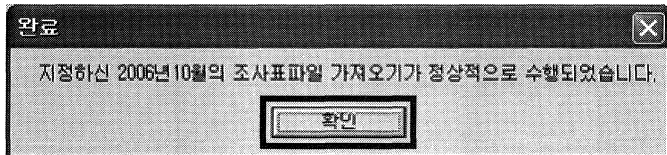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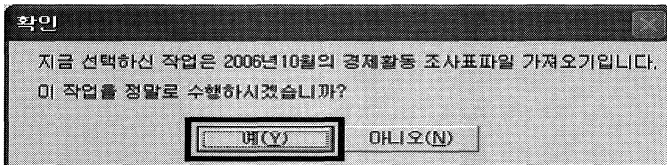
2) 경제활동 조사년월이 변경되었다는 확인창이 뜬 후 자동으로 업그레이드되며, 다시 한번 로그인 하도록 1번의 LOGIN 화면이 나타난다.



3) 경제활동 조사표의 전월자료와 금월자료 가져오기를 차례로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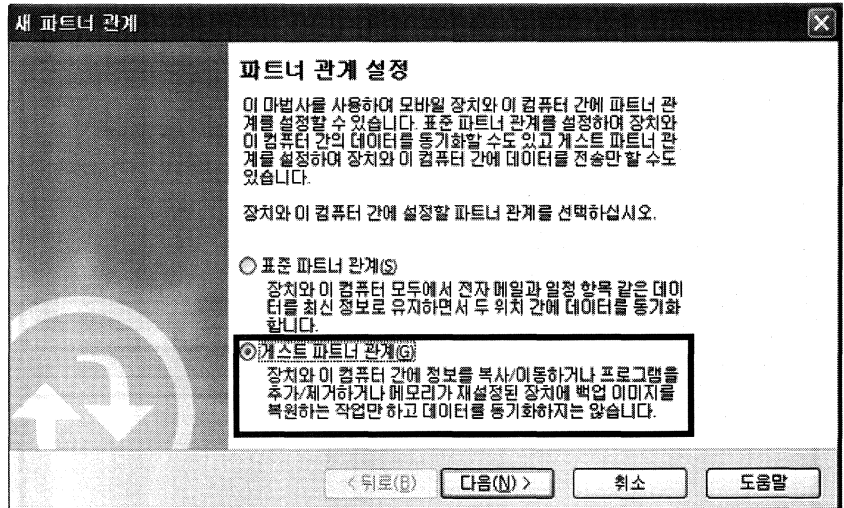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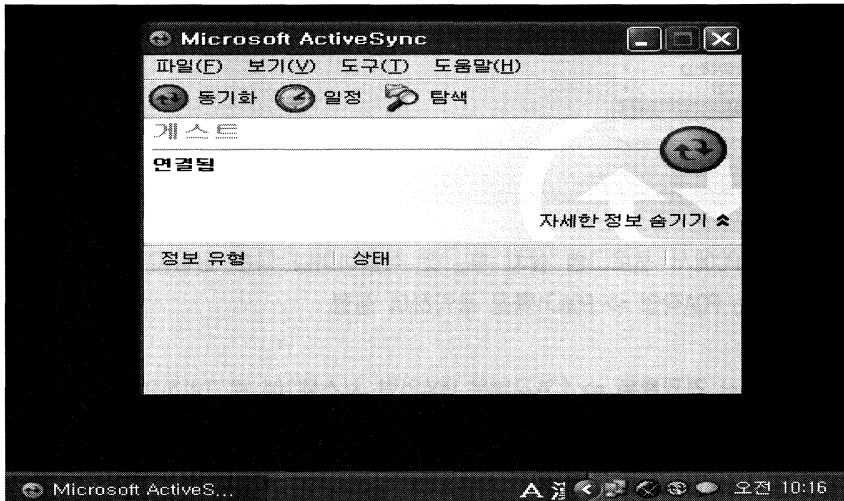


4) 확인 창에 예, 완료 창에 확인을 클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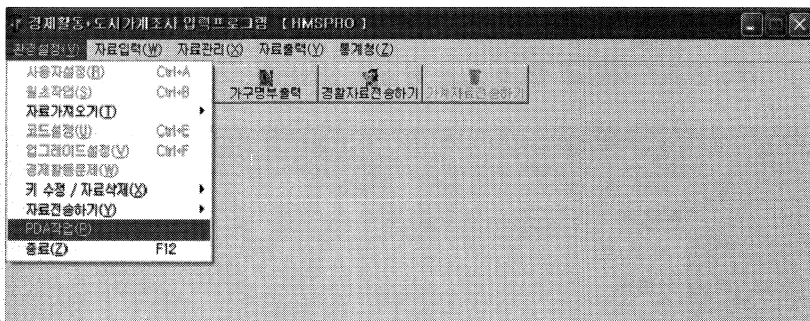


2. PDA를 이용한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입력방법

- 1) PDA 케이블을 PC에 연결하고, 파트너 관계를 게스트 파트너 관계로 설정하면 PDA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설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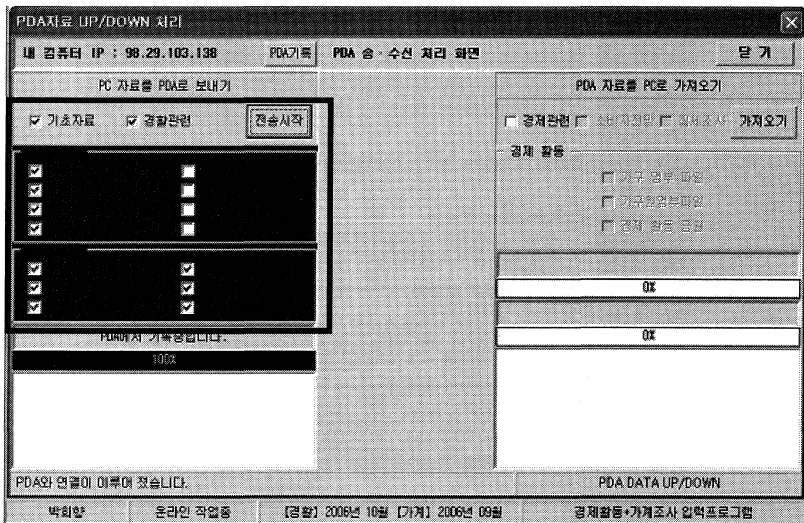
2) PDA에 자료수신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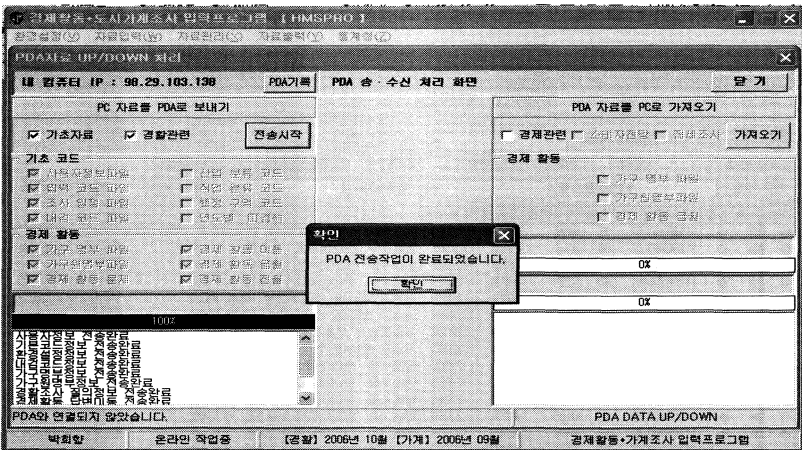


해당 PC에서 프로그램 설치 후, 첫 작업이거나 다른 담당자로 로그인 할 경우는 PDA작업 => PDA기록을 클릭하여 실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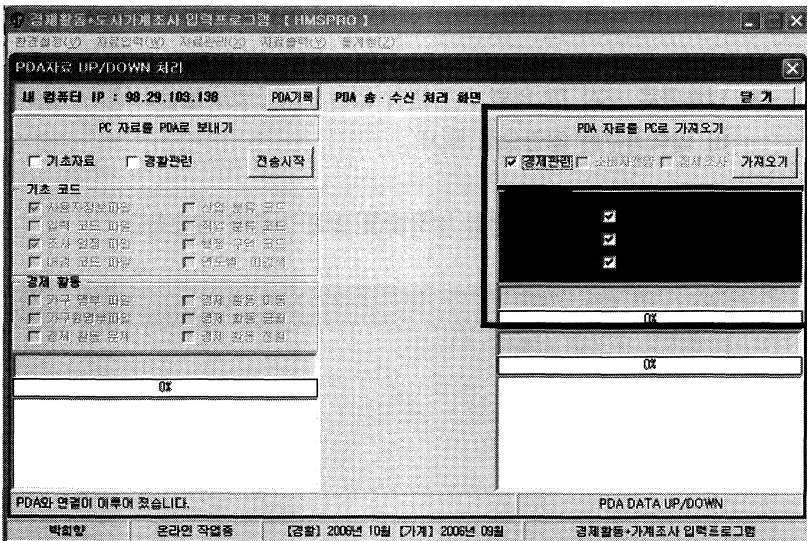
PDA에서 경제활동 => [가구부문 PDA입력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자료수신=> 접속을 누르면 PC의 PDA작업에서의 수신화면이 파란색이 된다.

기초자료와 경찰관련을 체크표시하고 전송시작을 클릭,
PDA상에서 자료수신 상황이 %로 나타난다.





- 3) PDA 전송작업이 완료되면, PDA에서 경제활동 ⇒ 가구관리⇒ 가구원⇒ 조사표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입력한다.
 입력이 끝난 후에는 다시 PC로 자료를 송신한다.



PDA 자료송신⇒ 접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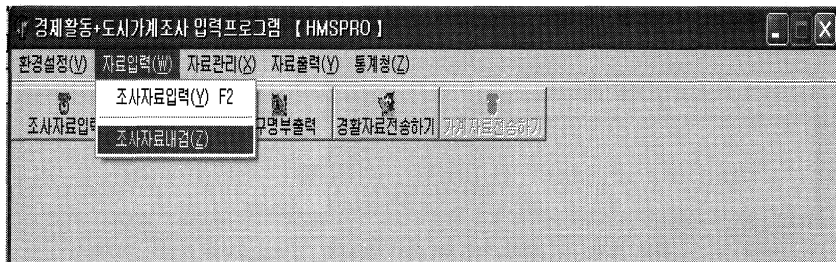
PC에서 경제관련 체크하여 가져오기 클릭

4) 전송이 끝난 후 PC의 조사자료입력에서 PDA로부터 자료전송 상태를 확인



◎; 입력완료, ▽; 미 입력 가구원이 있는 가구, ↔; 불응가구
미 입력가구는 공란으로 표시

5) 자료입력의 조사자료 내검을 클릭하여 입력 자료를 내검한다.



6) 내검된 오류내용을 확인하여, 조사자료입력 화면에서 해당가구로 들어가 수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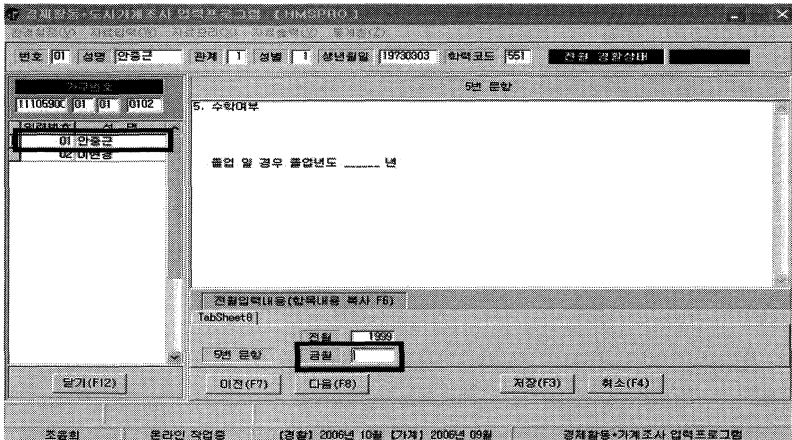


3. PC를 이용한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입력방법

1) 조사자료입력 => 해당가구클릭 => 우측의 경제활동조사 클릭



2) 성명을 클릭하여 엔터로 이동하여 좌측으로 커서를 옮긴 다음, 자료 입력을 하고 엔터 또는 F8키를 사용하여 다음 화면으로 간다.
키 설명> 이전(F7), 다음(F8), 저장(F3), 취소(F4)



한 가구의 입력이 완료되면 경찰란에 ◎가 나타난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자료내감을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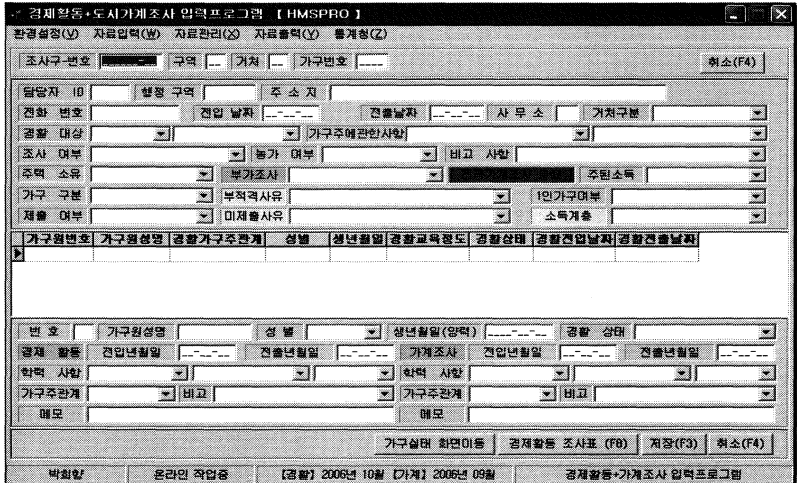
4. PC에서 신규 가구 입력 방법

1) 조사자료입력 화면에서 추가를 누른다.



2)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면 조사구번호부터 Enter키로 이동하며 차례로 입력한다.

가구원 입력시에는 가구원 란을 클릭하여 키보드의 Insert키를 누르고 입력한다. 가구원 한 명씩 추가할 때마다 Insert키를 누른다.



부록 [경제활동인구조사 흐름도]

